Ⅲ. 경제와 사회

-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2. 귀족의 경제기반
- 3. 농민의 생활
- 4. 천민의 생활
- 5. 의식주 생활

Ⅲ. 경제와 사회

1.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

- 1) 수공업의 발달
- (1) 궁중수공업과 관영수공업

가. 궁중수공업

궁중수공업은 중고기에 왕실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서부터 비롯하였다. 곧 內省 산하의 관제를 정비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하여 6부의 생산조직을 국왕 직속으로 귀속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신문왕 원년(681) 本彼宮을 수반으로 하는 궁중수공업의 체계를 정비하였다.1) 그 후 경덕왕 18년(759) 관호개혁을 전후하여 기술적 발전을 더함으로써 생산공정별로 매우 분업화되고 협업화된 체계를 갖추었고, 애장왕 2년(801) 御龍省의 정비 및 승격에 수반한관제개혁으로 《三國史記》職官志 中에 보이는 조직으로 완비하였다.

궁중수공업의 생산물품은 진골신분과 이에 준하는 투항왕족 및 당나라 장수·사신에게 내린 물품과 대외교역품 등에서 살필 수 있다. 이들은 대개 金·銀·銅 등의 광물류와 果下馬·美髢·海豹皮 등의 특산물, 牛黃·人蔘 등의 약재, 그리고 그 밖의 고급 직물류와 금은세공품, 침·금은침통 등의 의료기재 등이었다.

광물류는 鐵輸典에서, 금은세공품은 南下所宮에서 각각 관장하였다. 직물류는 국왕의 사여물과 교역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직물류 관련 궁중수공업 관사로는 繅絲(고치를 켜는 일)를 맡는 疏典, 실을 정련

¹⁾ 사南守, 〈新羅 宮中手工業의 成立과 發展〉(《東國史學》 26, 1992), 127~139쪽. ———, 〈궁중수공업의 성립과 정비〉(《新羅手工業史》, 신서원, 1996),

한 후 표백을 맡는 漂典, 염색을 맡는 染宮과 紅典 및 옷감을 짠 후에 印染을 맡는 攢染典, 직접 각각의 종류별 옷감을 생산하는 錦典(織錦房)·朝霞房 · 綺典(別錦房)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조하방은 다른 관사와 달리 경덕왕의 관호개혁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이는 기왕에 금전에서 생산되었던 朝霞紬・魚霞紬 등에 대한 중국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경덕왕 18년(759) 무렵 별도의 관사로서 새로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전은 8세기 중엽에 조하방과 직금방으로 분리되고, 기전은 그 중요성에서 두 직물류에 밀려 별금방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직조관계 관사가 조공물품과 관련하여 정비되었다는 것은, 궁중수공업을 운영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중국과의조공에 필요한 물품을 충당하는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細布의 경우도 7세기무렵에 이미 20승・30승・40승 등 올이 섬세한 물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베류(布類)에서 쌓은 이러한 직조기법은 기술적 발전을 더하여 마직・모직물의 직조에도 응용되었다. 9세기 무렵에 나타난 30升紵衫段이나 40升白氎布등이 그 실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麻典(織紡局)과 毛典(聚毳房)에서생산되었다.

한편 옷감에 무늬를 찍는 印染과 실을 염색하는 染絲의 과정은 염료의생산을 전제로 하며 직물의 가치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蘇木을 길러 염료를 채취하는 蘇芳典, 직접 인염과 염사를 맡은 攢染典·染宮·紅典 등의관사가 있었다. 또한 曝典에는 屬縣이 딸려 있었는데 중국 남북조시대의 暴室에 비교할 수 있어,2) 염색과 관련된 관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 염색을 맡은 관사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료생산 및 공급과 염색의 모든 공정이 궁중수공업 관사의 체계 안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직물생산관사나 철유전 등이 수취체제 안에서

²⁾ 唐長孺、〈魏晋至唐官府作場及官府工程的工匠〉(《魏晋南北朝史論叢》 續編, 帛書出版社, 1985), 47쪽. 이와 관련하여 전문수공업 집락으로서의 '…成'을 상정하기도 하지만(井上秀雄、〈新羅王畿の構成〉、《新羅史の基礎研究》, 1974, 411~415쪽; 三池賢一、〈新羅內廷官制考〉下、《朝鮮學報》62, 1972, 39~40쪽), 대체로 내성 산하 관사로서 일정지역을 귀속시켜 운영하는 체계가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드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골품제사회 안에서 色服 그 자체 가 하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3)

그런데 직물 생산관사가 분업화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죽제품 생산관사도 가죽을 다루는 皮典(鞄人房), 가죽을 무두질 하는 打典, 그리고 직접 가죽제품을 생산하는 관사로서 말 고들개를 제작하는 鞦典, 북(鼓)류를 생산하는 皮打典, 가죽신발과 가죽장화의 제조를 각각 담당하는 鞜典과 靴典 등으로 생산공정이 분업화되어 있었다. 그 밖의 筍虞・飮器・射侯 등을 제작하는 磨典, 왕의 자리를 만드는 席典, 지팡이(机杖)・밥상・책상・탁상 등을 만드는 机概典, 조공에 필요한 광주리(筐篚)는 대나무와 관련한 기물・건축재료・대화살(竹箭) 등을 제작하는 楊典 등이 있었다. 그러므로 궁중수공업은 매우 분업화되어 있었으며 개별화된 각 관사들은 긴밀한 협업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궁중수공업 관사에 속한 직원은《三國史記》職官志 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干-史의 계열과 翁一助·母·女子 등의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이들은 중국 관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신라 고유의 명칭으로서 중고기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개편되었다. 이들 직원들은 대체로 大舍에는 미치지 못하고 舍知나 史에 준하는 하급관리들로서 신분적으로 4두품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대개 궁중에 소속된 노비들을 거느리고 해당 관사에서 정해진 물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확인된 수만도 100여 명에 달하는데, 밝혀지지 않은 12여 개 관사까지 포함하면 총직원의 수는 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5)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많은 수의 노비들이 그들의 휘하에서 잡역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원희, 〈우리나라 삼국 및 통합신라시기의 직물생산과 염색〉(《고고민속》 1, 1963), 55~61쪽.

⁴⁾ 朴南守, 〈궁중수공업의 운영과 변천〉(앞의 책), 119~127쪽.

⁵⁾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과학백과사전출판부, 1978; 서울: 지양사, 1989), 33쪽.

나. 관영수공업

관영수공업은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성립·정비되었다. 먼저 중고기 수취제도의 정비과정에서 재지 장인들의 생산물품을 調 등의 방식으로 납공케 하는 한편 제방축조에서 볼 수 있듯이 재지 장인들을 중앙의 통제하에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신문왕 때에 工匠府監을 설치함으로써 일단의 완성을 보았다. 다음으로 군사·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병기제조의 업무를 비롯하여 축성 등에 장인을 징발하는 체계를 갖추었는데, 이러한 체계는 진평왕대에 大幢 등의 군단에 大匠尺幢主와 大匠大監을 설치한데서 비롯하며 신문왕대에 6정과 9서당제를 완비하면서 정비되었다.6)

신라 관영수공업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관사였던 공장부는 공인과 장인 곧 工匠을 관장하였던 관사로서, 고려시대 將作監의 전신이었다. 공장부는 진덕왕 5년(651) 倉部와 調府를 분리·설치함으로써 수취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흐름을 같이하여 공장부 主書를 두면서 비롯되었다. 그 후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여 관제와 역역체계를 정비하면서 신문왕 2년(682) 工匠府監을 설치하여 확충·완비되었다. 경덕왕 때에 공장부는 다시 典祀署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였으나, 이미 禮部에 속한 전사서가 있고 보면 그 바뀐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듯하다.7)

다만 공장부가 공장을 관리하는 관사였다는 점에서 성덕왕대에 설치된 京城周作典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성주작전은 성덕왕 31년(732)과 32년에 合과 卿을 각각 두면서 신설되었는데, 경덕왕대에 修城府로 개명되었다가 혜공왕대에 다시 경성주작전으로 환원되었다. 경성주작전의 신설은 7세기 중엽 이후 어느 시기엔가 축성의 업무가 군사조직으로부터 지방행정조직으로 이관되면서, 당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왕경의 행정관사의 정비와 흐름을 같이하여 왕경에 있는 성의 수축을 전담하는 관사가 필요했

⁶⁾ 朴南守,〈新羅 官營手工業 官司의 運營과 變遷〉(《新羅文化》10·11, 1994; 앞의 책) 참조.

⁷⁾ 李基白,〈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242等 주 22).

차南守, 위의 책, 159쪽.

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무렵을 전후하여, 중고기에 각각 경위와 외위로 구분되어 있던 官匠들을 왕경과 주·소경·군별로 엄격히 구분·편제함으로써 종래에 공장부가 일괄적으로 파악하던 공장들을 왕경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 공장부와 경성주작전은 役制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泰封 때에 각각 南相壇과 障繕府로 바뀌었다가, 고려시기에 이르러 공조 산하의 將作監으로 통합되었다.

집사부 산하 관사인 彩典도, 직원의 설치와 정비과정 및 그 구성이 공장부와 동일한데, 그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염색과 관련된 관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채전은 경덕왕의 관호개혁 무렵 궁중수공업관사인 染宮・紅典 등의염색 관련 관사를 설치할 때까지는 관복의 염색이나 건물의 채색 등에 필요한 염료와 관련된 일을 관장했을 것이다.8)

한편 중고기 무렵의 축성에는 예외없이 將軍·軍主가 축성의 책임자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의 축성이 군사조직을 통하여 장인과 일반 역부들을 징발하였던 사실을 반영한다.9) 이러한 관점에서 신라 군단 가운데 일종 공병부대라 할 수 있는 大匠尺幢과, 중고기의 핵심부대인 6정군단의 여러 군관가운데 보이는 大匠尺幢主·大匠大監 등의 이름을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진평왕대에 설치되어 축성 등에 인력을 징발하는 것과 관련한 직무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신라의 경우 축성작업이 군사방위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점과 관련하여, 군사조직을 중심으로 장인을 확보하여 필요시에 성을 쌓을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라 중고기에는 군사조직을 통하여 舟楫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는데, 문무왕 18년(678)에 船府를 설치함으로써 그 동안 병부의 大監・弟監이 기왕에 관장했던 주즙의 일에 관한 업무를 선부에 이관하였다.10) 그 후 경덕왕때 선부는 利濟府로 고쳤다가 혜공왕 때에 다시 선부로 되돌렸는데, 이는 태

⁸⁾ 朴南守,〈統一新羅 宮中手工業의 運營과 變遷〉(《素軒南都泳博士古稀紀念 史學論叢》, 1993)

^{----, 〈}관영수공업 관사의 운영과 변천〉(위의 책), 148쪽.

⁹⁾ 李基白,〈永川菁堤碑 貞元修治記의 考察〉(《考古美術》102, 1962; 앞의 책, 293~295等).

^{10) 《}三國史記》 권38, 志7, 職官上, 船府.

봉 관제의 水壇, 고려 전기 工曹 산하의 水部에 해당한다.11) 그런데 문무왕 18년 이전 병부에서 관장하였다는 '주즙의 일'이란 軍船의 조영 등과 같은 軍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러나 나당전쟁이 끝난 뒤 영역이 확대되고 해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군선의 조영보다는 조세의 수취나 해상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반 선박의 조영 등을 위한 선박관계의 일이 중요성을 띠게 되자.12) 선부를 독립 관사로 설치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문무왕 때에 새로 두었던 병부의 직원 가운데 弩舍知와 弩幢은 신병기라 할 수 있는 「木弩」를 제조하던 관직으로서, 기타 병기의 제조도 노의제조와 마찬가지로 병부 산하 관사에서 관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¹³⁾ 아마도 대장척당에 소속된 대장척당주와 대장대감을 중심으로 이러한 무기를 제조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대장척당주와 대장대감은 6정과 9서당에 각각 배속되어 있었던 만큼, 군사조직을 통하여 제조된 무기는 중앙의 무기고(武庫)뿐만 아니라 각 停이 소재한 지역의 무기고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병부와 6정군단 소속의 대장척당을 중심으로 편제된 일련의 축성· 선박조영·병기제조와 관련된 조직은 營造兵器의 책임을 맡은 당나라 軍器 寺나 고려 전기의 軍器監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다. 궁중 · 관영수공업관사의 변화

신라는 중대 초엽에 이르러 내성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신문왕 원년 (681) 본피궁을 수반으로 하는 궁중수공업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취제도와 군사·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工匠部·彩典·兵部·船府 등을 중심으로 한 관영수공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그런데 궁중수공업의 경우 매우 정비된 일련

¹¹⁾ 李泰鎭,〈高麗 宰府의 成立〉(《歷史學報》56, 1972), 5쪽의〈巫〉高麗 宰府의 成立 참조.

¹²⁾ 홍희유, 앞의 책, 23쪽.

¹³⁾ 홍희유는《三國史記》職官志 軍官組織에 보이는 四設幢의 弩幢・雲梯幢・衝幢 ・石投幢 등을 비롯한 皆知戟幢・長槍幢・火尺 등에서 각종 무기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홍희유, 위의 책, 24쪽). 물론 이들 부대에는 특수병기를 다 루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 조직이나 각종 전투의 실례를 볼 때 이 들은 오히려 특수 병기를 사용하는 전투부대로 보아야 할 듯하다.

의 체계를 보이지만, 관영수공업은 분산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궁중수 공업이 주로 국왕이나 왕실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생산체계였다면, 관영수 공업은 국가의 재정과 관사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체계였기 때문이었다. 경덕왕대 이후 궁중수공업 관사는 점차 관영수공업 관사에 통섭되어 갔다.

특히 나말려초에 이르러 수공업관사는 내성산하의 일개 관사였던 物藏典 이 태봉의 관제에서는 고려시대 小府寺의 전신인 物藏省으로 확대 개편되고, 신라 경덕왕대를 전후하여 생산공정에 따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던 생산 관사가 고려의 관제에서는 雜織署・都染署・中尙署 등으로 통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신라 하대에 서역 또는 중국의 사치품이 신라 에 유입되면서 궁중수공업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궁중수공업의 폐쇄적 운영만으로는 더 이상 왕실 귀족의 사치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된 때문이었다. 이에 폐쇄적인 궁중수공업 기술이 사회 저변에 보급 ·확대되 고. 궁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제외한 각종 물품을 貢賦 등의 형태로 수취함으로써 물장성이 생산을 맡는 관사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14) 이와 함께 大匠尺幢과 船府・工匠府・京城周作典・彩典 등의 관사를 중심 으로 분산적으로 운영되던 관영수공업은, 각각 고려 초기의 軍器寺와 水曹, 將作監, 소부시 산하의 도염서로 바뀌었다. 이는 결국 당의 관영수공업체계 곧 무기제작을 맡는 군기시, 토목공사의 조영과 수리 및 공장들을 관리하는 장작감, 관용물품을 제작하는 소부시의 세 관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왕실의 사적 경영의 성격이 강한 궁 중수공업이 조세제와 국가의 통치체제에 바탕을 둔 관영수공업에 통합되었 음을 의미하며, 또한 최소한의 물품만을 관영수공업에서 일괄적으로 제조하 고 여타의 물품은 민간 또는 전업적 수공업 집락에 위임한 때문이었다.

(2) 민간수공업

가. 농민수공업

'농민수공업은「男耕女織」으로 표현되듯이 일반적으로 가내 분업의 단계에

¹⁴⁾ 朴南守, 앞의 글(1993).

있었으나, 일부 수공업자는 생활일용품을 만들어 시장에 팔기도 하였다. 그러나 석탈해의 야장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2~3세기 무렵에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전업적인 민간수공업자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전업적 수공업자는 중고기까지도 집단별로 거주했는데, 《三國遺事》桃花女 鼻荊郞條에 보이는 사량부의 石工들은 그러한 좋은 사례가 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비형랑은 국왕의 신하로, 吉達은 大臣의 신하로 되면서, 집단으로 거주하였던 장인들은 각각 새로운 신분으로 계층화되었다. 이들 가운데 사량부에 그대로 남게된 장인들은, 《三國史記》권 46, 强首傳에 보이는 釜谷冶家와 같이 지방에머무르면서 전업적 수공업자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길달과 같은 이는 성덕왕 24년(725) 上院寺銅鐘을 조성한 照南宅匠 仕□大舍나혜공왕 7년(771) 皇龍寺鐘을 조성한 里上宅 下典과 같은 장인으로 되었을 것이며, 비형랑과 같은 이는 8세기 중엽 분황사약사동상을 주조한 强古奈麻나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한 관등을 가진 장인이 되었을 것이다.15)

결국 중고기 신라가 신분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전업적 수공업자들은 그 직능에 따라 계층화되었다. 이들가운데 일부는 농사와 함께 수공업기술을 발휘하는 농민수공업자로, 일부는 귀족들이 경영하는 수공업장이나 국가의 수공업장에 귀속된 장인으로 위치지워짐으로써, 각각 민간수공업과 귀족들의 사영수공업, 그리고 관영수공업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농민수공업자들의 구체적인 활동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나, 대체로 농민이다루는 호미·낫과 같은 농구를 비롯하여 수레의 부품, 건축에 필요한 철제품,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칼·마치·바늘 등의 철제품 등을 비롯하여 사원이나 주택의 건설, 기와의 제조 등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분업이 확대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업적 수공업자로서 관청에서 필요로하는 입역과 함께 工價를 받고 작업에 나아가 자기 영리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장인 사회가 분화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장인이 등장하게 되었고,16) 4~6두품의 官匠에 한정되었던 博士의 칭호가 일반

¹⁵⁾ 朴南守,〈新羅 上代 手工業과 匠人〉(《國史館論叢》39, 國史編纂委員會, 1992), 76~79\.

승장이나 장인들의 범칭으로 일컬어지게 되었으며, 아울러 장인들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전대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장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데는 慈悲·布施·福田·一如平等 등의 불교사상과 중국 고대사회에서 장인들의 노예적 노동을 사상적으로 희석시켰던 《瑜伽論》의 工巧明思想「기이 신라사회에 유입되어 영향을 끼친 일면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장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일부장인들은 나말려초의 전환기와 맞물려 고려 건국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사회에 四民觀念이 뿌리를 내리면서 절대 다수의 예속적 장인들은 工匠案이나 百工案牘 등에 등록되어 신역을 바치거나, 금소·철소 등의 수공업 집략에 편제되어 身役을 바치는 단순 생산자로 전략하였고, 일부 장인만이 武散階를 받는 등으로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18)

나. 귀족의 수공업 경영

귀족들의 수공업 경영상은 3세기 말경 昔于老가 동해안에서 鹽奴를 부렸음직한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선덕왕 11년(642) 大買縣 豆斯支沙干이 고구려와 군사적 동맹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구려로 들어가는 김춘추에게 靑布 500보를 증여했다는 것에서도 지방의 유력자가 독자적으로 수공업을 경영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궁중수공업의 성립과정은 6부의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6宮의 수공업 관사를 왕실에 귀속시키는 과정이었거니와, 이는 역으로 6부의 각 궁에는 귀족들이 나름대로 수공업장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신문왕 2년(682) 본피궁을 설치하면서 궁중수 공업의 체계를 확립하였다고 하지만, 진골귀족들은 여전히 기왕의 생산체계

^{16) 《}日本三代實錄》 권 17, 淸和天皇 貞觀 12년 2월 20일 및 권 18, 淸和天皇 貞觀 12년 9월 15일.

¹⁷⁾ 공교명사상은 "보살이 베풀어야 할 만한 때가 아닐 때에는 이전부터 익힌 工巧 業處에서 제작의 의도를 행하고, 적은 노력으로 많은 財寶를 만들어 모아 여 러 중생에게 베풀어 주는 이익을 주라"는 사상으로서 진덕왕대에 신라에 전 해졌던 것으로 보인다(朴南守,〈승장의 활동과 그 사상적 기반〉, 앞의 책, 249 ~256쪽).

¹⁸⁾ 朴南守、〈중・하대 장인의 분화와 사회경제적 지위변동〉(위의 책) 참조.

를 유지하였다. 신라 중대말 하대 초엽의 상황을 보여주는《新唐書》新羅傳에서 "宰相家에는 祿이 끊이지 않으며 奴僮이 3천 명이다. …"라고 하였듯이, 이들 재상가에 속해 있던 노동 가운데는 이상택의 하전이나 조남택 장인과 같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들은 궁중수공업장에서 하급관리들이 수공업장을 경영하였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수공업 생산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집작된다.

그런데 일본 正倉院에 소장된 꽃문양이 있는 花氈에 덧붙인 貼布記와 자주색의 毛氈에 덧붙인 첩포기의 '行卷韓舍'나 '紫草娘宅' 등은 화전과 色毛氈을 생산하였던 귀족들의 수공업장 경영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들 화전과 색모전은 대체로 진골귀족들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산된 것이 일본에 보내졌던 것으로서, 진골귀족이나 두품신분들이 경영하였던 수공업생산의 면모를 시사한다.

다. 사원의 수공업 경영

사원에서도 나름대로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수공업 경영이 있었다. 사원에서의 수공업 경영은 여러 불사에 나타난 승장의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는데, 대체로 중대의 寺院成典과 政法典의 전신 조직을 이루는 속관들이 사원의 건축이나 기타 불사, 그리고 사원의 토지 등을 관장하던 형태에서, 중대말 하대 초엽부터 점차로 승단이나 사원의 자율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각 사원들이 田莊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력을 성장시키고 국가의 통제로부터 일탈해 나가는 것과 흐름을 같이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8세기 중엽부터 僧匠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청정무구를 지향하던 승려들이 장인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중고기에 유입된 工巧明思想이나 9세기 중엽에 들어온 百丈의 淸規에서 영향받은 일면도 있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승장은 석장계열과 철장계열로 구분된다. 철장계열은 다시 鑄造匠과 細工匠(鐫字匠)으로, 석장은 탑비 등을 조성하는 장인과 刻字僧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밖의 불사에 필요한 여러 유형의 승장들이 있었을 것으 로 짐작되는데, 고려시대의 승장이 각자승·석공승·철장승·목수승·와장승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¹⁹⁾ 신라에서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여겨진 다. 그런데 이들 승장 가운데「伯士」・「助博士」・「大伯士」등의 명칭으로 일컫는 이들이 있었다. 기술자로서의 博士라는 이름은 본래 官匠에게 주어진 칭호로서,²⁰⁾ 대체로 4~6두품급의 신분층이었다. 이들 명칭은 중대에 이르러國學·編刻典 등의 관사에 중국식 박사제를 시행하면서 보편화되어 경덕왕대를 전후하여 대박사-차박사 등으로 분화되었고, 점차 일반 장인들에게도확대 적용되었다.²¹⁾ 이러한 명칭을 승장들이 일컫게 된 데는 저들이 해당 분야에서 관장에 버금할 만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고, 승려들 상호간에 기술의 정도에 따라 명칭이 분화되었으며, 아울러 승장 상호간에 기술을 전수・습득하는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승장들의 존재는 사원에서의 수공업 경영의 가능성을 상정하게 하지만, 義寂이나 太賢의 저술에서 재가자의 상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승려들의 상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²²⁾ 각 사찰은 자체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 하여 이들 승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공업을 운영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3) 각종 수공업 기술의 발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수공업 분야에 상당한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고구려·백제의 기술까지 포용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선진문물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기술을 수용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서 신라 특유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 시기 수공업 기술의 발전은 주로 궁중·관영수공업 분야의 것이었지만, 이 또한 귀족이나 민간 수공업분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白紙墨字大 方廣佛華嚴經寫經〉(755)에서 볼 수 있듯이 경위와 외위의 관등을 가진 장인들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불사에 일종 工價를 받고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

¹⁹⁾ 林英正、〈高麗時代의 使役・工匠僧에 대하여〉(《伽山李智冠스님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1992), 765~772쪽.

²⁰⁾ 朴敬源, 〈高麗鑄金匠考-韓仲敍와 ユ의 作品-〉(《考古美術》149, 1981), 13~16쪽.

²¹⁾ 朴南守,〈新羅 匠人의 分化의 社會經濟的 地位 變動〉(《芝邨金甲周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1994), 207~211쪽.

²²⁾ 崔源植、〈新羅 義寂의 梵網菩薩戒觀〉(《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 史學論叢》, 1992), 55等.

^{----, 〈}太賢의 菩薩戒 이해와 現實問題 인식〉(《伽山學報》2, 1993), 127쪽.

한 과정에서 이들 관장들의 기술이 일반 장인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애장왕 5년(804) 승려 장인인 覺知師가 禪林院鐘을 주조하였던 데서 볼 수 있듯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관장들이 주도하였던 주종이 9세기 초엽에는 점차 일반 승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과 일반 수공업 사이에 기술적인 교류가 있었고, 그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수공업기술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통일신라시대의 철생산은 자석 등의 광물을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으며, 이와 함께 철의 사용량도 전시대에 비하여 놀랄 만큼 증가하였다. 이는 신라가 이 시기에 이르러 중고기에 비하여 채광 및 야철기술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채광법의 발전은, 원광석이 砂鐵에서 赤鐵鑛 또는 磁鐵鑛 등의 보통 광석으로 바뀐 것에서 살필 수 있는 바,23) 삼국시대에는 露天法이었던 것이 통일 이후 땅속의 광맥에 따라 수직으로 갱도를 파내려가 채광하는 堅坑法으로 변하였다.24) 야철법에 있어서도 종래 삼국시대에는 原鑛과 木炭의 炭燒式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통일 이후에 규모를 확대시켜 도가니와 풀무를 이용한 방법으로 발전하였다.25)

철가공 기술은 鑄鐵과 鍛鐵技術을 들 수 있다. 주철기술은 삼국시대에 馬 具나 무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 후 점차 합금기술이 발달함으로 써 불상이나 종을 조성하거나 솥 등의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었다. 특히 무기와 농구류의 경우 삼국시대에는 주로 炒鋼法에 의해 생산된 중·고탄소강의 철소재를 목탄 중에 가열하여 반복 鍛打하는 방법이었으나,26)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으로 인정되는 馬塚 138호분과 안압지・황룡사지・월정교・월성해자에서 출토된 무기・농구류의 경우 대부분이 섭씨 1,300도 이상의고온에서 용해한 白鑄鐵로서 주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27)

한편 금속의 넓게 펴지는 성질이나 열을 가하면 용해되는 성질 등을 이용

²³⁾ 尹東錫、〈統一新羅의 鐵器〉(《三國時代 鐵器遺物의 金屬學的 研究》, 高麗大出版部, 1989), 203等.

²⁴⁾ 尹東錫, 〈古新羅의 鐵器〉(위의 책), 134~135쪽.

²⁵⁾ 尹東錫, 앞의 글(1989a), 134~135쪽.

²⁶⁾ 尹東錫, 앞의 글(1989b), 136~145쪽.

²⁷⁾ 尹東錫, 앞의 글(1989a), 158~204쪽.

하여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기술도 발달하였는데, 대체로 板金法과 打出法 등의 기술이 사용되었다. 또한 금속제품을 장식하는 기술 곧 彫金技術로는 魚子文과 象嵌, 線彫技術 등을 비롯하여 금가루와 금실로 무늬를 장식하는 鏤金細工技術(Filigree 기술)이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7, 8세기 무렵 각종 사리장엄구나 器皿・粧飾金具 등에 連珠文帶와 함께 이용되었는데, 통일신라 토기나 나말려초 도자기에까지 응용되어 고려시대의 독특한 청자상감법을 창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속제품을 장식하는 기술로서 鍍金法을 들 수 있는데, 아말감에 의한 도금과 金箔鍍金・漆箔法 등이 있었다. 신라에서는 주로 금아말감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수은에 금을 섞어서 동 또는 동합금한 제품에 바른 후 이를 가열하여 수은을 증발시킴으로써 금만을 남게 하여 도금하는 방법이었다.28)

다음으로 통일신라시대에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수공업 제품으로 궁중수공업 관사에서 생산하였던 직물류를 들 수 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물품 가운데 보이는데, 7세기부터 비단류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보다 섬세한 베가 생산되었다. 그 후 8세기 무렵에는 명주류와 모직물류가 새로이 나타나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의 유입이나 또는 직물류의 기술을 모직물에 응용한결과였다. 또한 이 시기에 五色氍毹 등 염색과 관련된 직물류의 이름이 많이나타나고 있어서 염색기술상의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9세기에 이르러서는 비단류에 문양을 내는 기술과 함께 가는 베류의 직조기술이 마직물이나 모직물의 직조에 응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통일신라의 토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정형화된「신라토기」를 계승하면서 백제와 당나라의 기술이 일부 수용된 형태로 발전하였다. 7세기초에 이르러서부터 당나라 영향을 받은 그릇 모양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전후하여 스탬프로 문양을 찍은 인화무늬 토기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초기 통일신라의 토기로 이해되는 경주 西岳里 石室墳 출토 굽다리접시나 목항아리는 고식 신라토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안압지에서 출토된 일련의 토기 가운데 홈이 파인 구

²⁸⁾ 李蘭暎、《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一志社, 1992), 173~256쪽.

연고배 등은 백제 계통이며, 그리고 신라의 고배와 수·당 계통의 굽달린 사발(溫)이 합해진 다리 달린 사발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신라의 전통적인 토기 형식에다 백제나 중국의 토기 형식을 가미한 것이었다. 특히 안압지 출토 굽다리접시에는 물고기알무늬(魚子文)가 보이는데, 이는 7세기 무렵 각종 금속제품의 장식문양으로 이용되었던 것이 토기에까지 응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후 忠孝洞古墳 단계에서는 굽다리접시의 뚜껑이 완전히 사라져,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고배의 형식 곧 다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가진 뚜껑없는 굽다리접시(無蓋高杯)의 전형을 이룬다.29) 이와 아울러 9세기 무렵에 중국 浙江省 지구의 越州窯 햇무리굽 청자가 당시 활발한 사무역에 힘입어 도입됨으로써 고려청자의 기원을 이루기도 하였다.30)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나타난 토기 제작기술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뼈단지나 鬼面瓦 등에 유약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종래의 신라토기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굽는 과정에서 잿물에 의한 자연유만이 나타났던 것인데, 7세기 중엽부터 鉛釉 즉 산화연을 염기로 하는 유약과 灰釉의 두 가지방법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 시기 토기의 형식이 그러하듯이 백제·중국을 통하여 전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연유는 용해도가 섭씨 700~800도에 불과하여 가마의 온도가 올라가면 모두 타버리기 때문에, 연유를 바른토기는 저화도의 산염으로 구워야 하고, 고온 환원염의 전통 신라토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약을 바른 토기는 회백색 또는 적갈색의 빛깔을 띤 軟質土器로서 실용성보다는 특수 용도에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31)

통일신라시대의 조선기술은 문무왕 18년(678) 船府라는 독립된 관사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발달한 해상력에 기인하지만, 실제로 당시의 조선기술이 어떠하였는지, 배의형태와 구조가 어떠하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5,6세기 무렵의 연안용

²⁹⁾ 金元龍, 《新羅土器》(열화당, 1981), 84~90쪽.

³⁰⁾ 鄭良謨、〈概說 高麗青瓷〉(《高麗青瓷名品特別展》,國立中央博物館,1989),268· 281等。

³¹⁾ 金元龍, 앞의 책, 16~19쪽.

소형 배모양의 금령총 출토의 배모양 토기(호암박물관 소장)와 안압지에서 출 토된 7, 8세기 무렵의 놀이배(경주 국립박물관 소장)만이 현존할 따름이다. 특 히 안압지에서 출토된 배는 韓船의 초기 모습을 전해주는 半構造船으로서 L 자형 邊材, 독특한 나무못(木釘), 加龍木 등 우리 나라 고대선의 특징을 보여 주며, 11세기 중·후반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는 「莞島船」과 상통한다고 한 다. 이는 신라시대에 중국선이나 일본선의 구조와 선형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구조법에 의한 한선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32)

사실 신라선에 관한 기사는 우리측 사료상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일본측 사료에 많이 보이고 있다.《續日本後紀》권 8, 仁明天皇 承和 6·7년조에는 9세기 중엽의 신라선이 '바람과 파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또는 '능히 파도를 헤치고 갈 수 있다'는 우수한 배로 소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라선은 9세기 초엽 張保皐가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해상권을 장 악할 때에 이미 존재하였는데, 당시에 장보고의 원양무역선은 갑판 위에 선 실을 두고 돛대를 두 개 이상 장비한 平底型船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중국선인지, 신라 고유의 배인지, 아니면 양자의 절충형인지는 분명하지 않다.³³⁾

그런데 9세기 초엽 중국을 다녀온 일본 승려 圓仁의《入唐求法巡禮行記》에 따르면, 원인 일행이 신라인 통역자 金正南의 주선으로 개성 4년(839) 윤정월 4일에 새로 산 배를 수리한 바 있는데, 楊州로부터 楚州에 보냈던 都匠 · 番匠 · 船工 · 鍛工 등 36명의 장인들은 신라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장보고의 원양무역선 등의 기술적 계통은 분명하지 않지만, 신라인 장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신라인 수수 · 초공들을 중심으로 운항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원인 등이 이러한 배를 이용하여 일본에 귀국한 이후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9세기 중엽경에 이르러서는 일본인들이 다투어 신라선을 선호하게되었던 것이다.

신라에서의 제염법은 분명하지 않으나 고려 光宗 9년(958)에 세워진〈太子

³²⁾ 金在瑾,〈張保皐 時代의 貿易船과 그 航路〉(《張保皐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148~149쪽.

³³⁾ 金在瑾, 위의 글, 147~151쪽.

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의 '바닷물을 찌는 수고를 더하고'라는 문구에서 바닷물을 쪄서 농축시키는 방법(海水直煮式)으로 소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있다.34) 이러한 제염법은 많은 재목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재목과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닷가에 鹽盆 등을 설치하였다.「鹽盆」은 일반적으로 바닷물을 찌는 가마솥을 말하는데, 경문왕 12년(872)에 세워진〈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碑〉의 끝부분에 이에 관한 기록이 있어 지금까지는 염분을 토지 면적단위인 結로 표시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鹽田과염분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소금 생산시설을 일컫는 용어로 추측하여 왔다.35) 그러나 고려·조선시대를 막론하고 염분은 소금을 찌는 가마솥을일컫는 이름이었으며, 이를 세는 단위도 坐數나 所를 사용하였고, 염분은 솥의 크기에 따라 大釜・中釜・小釜 등으로, 그리고 솥의 재질에 따라 鐵盆・土盆 등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10세기 중엽까지의 제염법은 여전히 바닷물을 쪄서 소금을 농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라 하겠다.36) 다만 이시기에 단편적이나마 민간에 소금이 유통되었음직한 기록이 있어서,37) 소금생산량이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2) 상업의 발달

신라 지역에서의 시장의 등장은 이미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교환관계를 국가의 운영원리에 맞게 새로이 정비하였다. 照知麻立干 때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관용 도로를 수리한 것이나, 왕경의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품을 유통하게 하고 동시전을 개설한 것 등은 바로 그러한 정책의 반영이었다. 또한 문무왕 5년(665)에 絹布의 길이 단위를 '10尋/匹'에서 '길이 7보・너비 2척/필'로 고친 것은, 국가가 당시 교환의 표준이 되는 견포의 척도를 통일함으로써 새롭게 변

³⁴⁾ 崔仁渷 撰、〈太子寺朗空大師白月栖雲塔碑〉(《朝鮮金石總覽》上,朝鮮總督府,1919), 182等.

³⁵⁾ 權寧國,〈14세기 権鹽制의 成立과 運用〉(《韓國史論》 13, 서울大, 1985), 15・30쪽.

³⁶⁾ 朴南守, 〈각종 수공업기술의 발달〉(앞의 책), 81~87쪽 참조.

^{37)《}三國遺事》 권 3, 塔像 4, 三所觀音 衆生寺.

화한 교환관계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농업으로부터 분리된 수공업 뿐만 아니라 상업까지도 국가의 주도하에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1) 국내 상업

신라 상업의 중심은 왕경의 시전이었다. 소지마립간 12년(490) 사방의 재화를 유통케 하기 위하여 市肆를 두면서 비롯한 시전은, 지증왕 10년(509) 東市典을 개설하여 관리를 배치함으로써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통일 후왕경의 인구가 증가하고 물화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효소왕 4년(695) 西市典과 南市典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이러한 시전은 왕경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고, 신문왕 때에 9주 5소경을 설치하면서 각 소경과 지방의 주요 거점도시에도 개설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시전의 개설은 도시의 발전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신라 전성기의 경주에는 초가집이 없었고 거리 모퉁이마다 담장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6部 55里 360坊의 시가 규모에 173,936호가 있었다고 한다.38) 그런데 시전의 구역이 왕경의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남으로 확대된 것은 인구의 증가와 함께 왕경의 확대에 따른 조치였다고 보여진다.

시전의 모습은 문무왕대에 廣德이 짚신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써 생업으로 삼았다는 것이나,《破閑集》中·下의 김유신과 원효의 일화에 보이는 '屠沽'와 그 가운데에 姪房·酒肆 및 倡家 등이 있었다는 등에서 그 번성하였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혜공왕 4년(768) 신라를 다녀간 당나라 사신 顧悟의 《新羅國記》를 바탕으로 하여 찬술된 것으로 보이는 《新唐書》新羅傳에 "市에는 모두 婦女가 貿販을 한다"라고 한 것은 오히려 통일기 왕경의 시전모습과 차이가 있다. 이《신당서》의 기사는 왕경에 있는 시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場市의 모습이거나,39) 아니면 鄕市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한다.40) 그러나 이로부터 100여 년 뒤의 기록이긴 하지만 〈竅興寺鐘銘〉이나

^{38)《}三國遺事》 권 1, 紀異 1, 辰韓 및 권 5, 避籐 8, 念佛師. 李基白・李基東、《韓國史講座》 1, 古代篇(一潮閣, 1982), 332等.

³⁹⁾ 홍희유, 《조선상업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9) 35쪽.

⁴⁰⁾ 劉元東,〈古代-高麗時代의 市場形成史〉(《都市問題》2-8, 한국도시행정협회, 1967), 27쪽.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銘〉에서 엄청난 양의 철을 市買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막대한 양의 철 등을 매입할 수 있는 시전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41) 더욱이《三國史記》弓裔傳에 보이는 '鐵圓市廛'이나《三國遺事》王曆後高麗條의 '油市' 등의 존재에서 지방의 시전과 한 가지 물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시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신라의 시전이 훨씬 발달하였고, 국내상업이 융성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시전에는 관리가 파견되었는데, 동・서・남시전에는 각각 '監(2명)-大舍(主事, 2명)-書牛(司直, 2명)-史(4명)'을 배치하여, 총 30명의 관리들이 왕 경의 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신라 여타 관부나 당나라 兩京諸市 署의 '令(1명)-丞(2명)-錄事(1명)-府(3명)-史(7명)-典事(3명)-掌固(1명)'의 직 원구성과 비교했을 때에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었다. 이들 시전의 관리들이 어떠한 일을 관장했는 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당나라의 경우 財貨의 交易과 度量器物의 眞僞輕重을 판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42)으로 보아 신라의 경우 도 그러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곧《三國史節要》신라 儒禮王 15년조에는 印 觀과 署調의 교역에 따른 미담을 掌市官이 국왕에게 아뢴 이야기가 전하는 데, 비록 전적으로 이 기사를 신빙할 수 없을지라도 신라 시전의 관리들이 시전의 교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문무왕 5년(665) 도량형의 개정 사실과 5升許器·5斗器 등 법제화된 量器의 존재를 볼 수 있 는데, 그러한 도량형의 제정과 정형화된 양기 등은 결국 시전의 교역에 필요 한 것으로서 시전의 관리들이 관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라가 시전을 설치한 것은〈聖德大王神鐘銘〉의 '들에서는 근본인 농사에 힘쓰고, 시전에는 넘쳐나는 물건이 없었다'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시전을 통하여 재화의 수급을 조정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한편 신라는 통일 이후 9주 5소경을 설치하고 北海通・鹽池通・東海通・南海通・北搖通을 설치하여 모두 왕경의 5역 곧 乾門驛・坤門驛・坎門驛・艮門驛・兌門驛을 통하여 왕경에 이르도록 하였다.43) 물론 이러한 교통망의

^{41)〈}新羅竅與寺鐘〉(黃壽永編,《韓國金石遺文》,一志社,1976),288等. 金穎撰,〈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朝鮮金石總覽》上),63等.

^{42) 《}新唐書》 권 48, 志 38, 百官 3, 兩京諸市署.

정비는 군사·행정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세금의 징수 및 각 지방의 물산을 왕경에 집산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물산의 집산은 주로 상인들이 육로나 해로를 통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다. 사실《三國遺事》塔像, 敏藏寺條의 '長春이 海賈를 따라 장사에 나갔다'는 구절에서, 경덕왕 4년(745) 무렵에 이미 海商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해상은 처음에 세금이나 공물 등의 조운44)에 종사하던 이들이 각 지역의 특산물을 轉運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들은 왕경의 출입항이었던 울산의 개운포를 통하여 왕경의 시전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각 지방에 왕경의 물품을 轉賣하였을 것이다.

결국 왕경이나 지방의 거점 도시에 설치된 시전에서는 일반 민간인의 일용품 외에도 철이나 기름, 흥덕왕 교서에 보이는 것과 같은 서역 물품 및 심지어는 노비들까지도 매매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은 민간 수공업자와 부녀자들에 의한 행상, 그리고 육운·해운 등을 통하여 매매되었다. 이들 시전에서는 布와 米穀을 주요한 교환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무열왕 때에 도성안 시장의 물가가 포 1필에 租 30섬 또는 50섬이라고 한 것이나45) 문무왕5년(665)에 絹布의 길이 단위를 '10尋/匹'에서 '길이 7보 너비 2척/필'로 고친 것은 당시에 미곡과 견포가 교환의 기준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에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용한 것이었다.

신라의 삼국통일로 농업생산력을 비롯한 사회 제반 생산력이 향상되고 국내 상업이 활발해지자, 국가로서는 이를 위하여 화폐를 제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신문왕 5년(685)에 건립된 사찰인 望德寺의 승려 善律이「錢」을 시주하여 6백 반야를 조성하고자 하였다는 데서,46) 그 실상은 잘 알 수 없지만 국가가 교역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鑄錢을 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

⁴³⁾ 井上秀雄, 앞의 글, 399~405쪽.

⁴⁴⁾ 漕運은《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671) 7월조의 "人力疲極 牛馬死盡 田作失時 年穀不熟 所貯倉粮 漕運並盡"이란 문무왕의 薛仁貴에 대한 답서에서 확인된다. 특히《日本書紀》권 21, 嵯峨天皇 弘仁 2년(811) 8월 계유조기사에서 漕運에는 해당 지방민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45)《}三國遺事》 권 1, 紀異 2, 太宗春秋公.

^{46) 《}三國遺事》 권 5, 感通 7, 善律還生.

다. 이에 대하여 《海東釋史》 錢貨條에는 신라가 금은으로 대·소 두 종류의무문전을 만들어 유통하였던 듯이 서술하고 있으나 그 근거 등이 분명하지 않아 확언하기 힘든 실정이며, 신라 말엽 왕경 주변에서 麤布를 물품화폐로서 이용한47) 흔적들이 보일 뿐이다. 아무튼 주전의 시행여부와 관련없이 일반인들은 대체로 포와 쌀을 교환수단으로 이용하였다.48) 당시의 물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무열왕 때의 市價와 관련하여 布 1匹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물품 곧 租·金·鐵(輸) 등의 물가를 추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49)

〈표〉 물가 추산표

(311)	E-1 1 C-4		(기준가:布 1匹)
구 분	租	金	鍮(鐵)
최저가(/포 1필)	30石	약 13分	약 13廷
최고가(/포 1필)	50石	약 21分	약 21廷
단 가	1石/石	2.3石/分	2.3石/廷

(2) 대외교역

신라의 대외교역은 처음에는 당나라 및 일본과 사신을 파견하면서 貢物과 廻賜品을 주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公貿易이 중심이었다. 이러한 교역은 주로 사신들의 내왕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당나라와는 경주—당은 포—산동반도 등주로 이어지는 북부연안항로와 중부횡단항로, 그리고 경주—회진—중국의 강회지방으로 연결되는 南部斜斷航路를 거쳐 장안에 이르러 행해졌다.50)

당나라와의 공무역은 공물과 회사품의 교환을 통한 교역을 비롯하여 당나라의 官市 개설을 통한 교역, 互市를 통한 교역으로 구분된다. 공물과 회사

^{47)《}高麗史》 권 33, 志 33, 食貨 2, 貨幣.

^{48)《}增補文獻備考》 권 163.

⁴⁹⁾ 물론 이러한 물가의 산출에 있어서 물가의 변동이나 시대적 차이 등은 자료가 없으므로 전혀 고려할 수 없지만, 그 산출법은 朴南守,〈金大城의 佛國寺 造營과 그 經濟的 基盤〉(《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18-佛國寺의 綜合的 考察 -, 1997), 69~70쪽 참조.

⁵⁰⁾ 權悳永, 〈遣唐使의 往復行路〉(《古代韓中外交史》, 一潮閣, 1997), 188~208\.

품의 교환은, 먼저 邊州에서 遣唐使가 가지고 간 공물의 종류와 수량을 검열하여 鴻臚寺에 보고하면, 홍로시에서는 그 가격을 산정하고 회사품의 물량을 정하여 귀국시 견당사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에 사신들 개인에게도 관등의 고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선물을 내려주었다. 官市는 사신의편의를 위해 각종 行鋪로 하여금 사신의 객관 안에 상품을 진열하여 교역케하는 방식이었고, 互市는 특산물을 당나라 조정에서 高價로 구입해주던 방식이었다. 이 밖에도 비공식적으로 사신들은 본국 왕실 혹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51) 역으로 당나라 사신이 신라에 와서 국왕으로부터 물품을 하사받는다든지, 신라 상품을 다량 구매하여 당나라에 돌아가막대한 이윤을 남긴 경우도 있었다.52)

그런데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공무역은, 신라가 특산물과 직물류 및 금속 가공품을 비롯하여 물품화폐의 성격을 지닌 금·은·동·포 등을 공물로 가져간 데 대해, 당나라는 외교적인 의례품과 아울러 직물류, 금속가 공제품 및 문화 관련 물품을 사여하는 형식이었다. 이와 같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무역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공물로 가져간 특산물의 경우 牛黃・人蔘・美髢 등은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것으로서 당나라에서 매우 선호하였던 물품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신라에서 가져간 직물류나 금속가공품의 경우에는 시대가 갈수록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라 궁중수공업 생산의 발전에 바탕한 것으로서, 9세기에 들어서면 동남아 수입물품을 가공하여 중국에 보냄과 아울러, 불경과 불상까지도 당나라에 보낼 정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셋째, 신라가 가져간 물품 가운데 金・黃金・麩金・銀・布 등이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당나라 남부 지방에 유통된 庸調銀이나, 兩稅 法이 성립된 이후에 일어난 동전의 품귀현상, 그리고 이러한 화폐와 함께 통용되었던 현물화폐로서의 금과 포 등이 지니는 가치에 따른 것으로서,53) 신라조정 또는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일종 물품화폐

⁵¹⁾ 權惠永, 〈遣唐使의 活動〉(위의 책), 274~278쪽.

⁵²⁾ 權惠永, 위의 글, 281~282 참조.

⁵³⁾ 栗原盆男・布目潮渢,《中國の歷史》(東京;講談社,1975),95・294・305\ 참조.

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헤아려진다. 신라가 당나라에 宿衛學生을 보낼 때면 국가에서 買書銀이나 買書金을 주어 학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충당토록 하였던 데서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중국에서 내린 회사품의 경우 외교 의례적인 물품 외에 가공제품이란 것도 대체로 국왕 또는 왕실 등에서 사용될 만한 의복류와 기물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원성왕 2년(786)과 경문왕 5년(865)의 당나라 회사품이 모두 왕과왕비, 왕태자·대재상·차재상 등에 한정되었다는 데서도 드러나지만, 결국공무역이란 것이 당시의 최고 지배층이었던 국왕과 왕실 귀족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섯째, 공무역을 통한중국 문화의 수용은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공무역은 당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일본과도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공무역은 신라의 調·土毛 등으로 표현된 물품과 일본의 黃金‧明珠‧綿 등의 교역으로 이루어졌다. 신라가 일본에 보냈던 조 또는 토모 등은〈買新羅物解〉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향료·안료·염료·금속·기물·직물·서적·일반 생활용품 등 당나라·신라·동남아시아 제품들을 망라하는 것이었고,54) 일본측에서 신라에 보냈던 물품은 황금·명주·면류 등으로서 당시 동북아시아권에서 물품화폐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통일 이후 신라의 일본과의 사신 왕래는, 신라가 당나라와 외교적 마찰로 인하여 양국관계가 소원해있을 때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북쪽에 발해가 들어서면서 당나라와 신라, 일본과 발해가 각각 연대를 맺게 되자, 신라 성덕왕 때부터 일본과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여 경덕왕 12년(753) 신라왕이 일본의 오만무례함을 이유로 사신을 받지 않음으로써 경색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55)

그러나 일본측의 新羅交關物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56) 공무역에 대신한 私貿易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더욱이 9세기 초엽 신라의 제반 사회적 갈등 과 왕위쟁탈전 등의 정치적 여건은 이러한 상인들의 사무역을 부추기는 배

⁵⁴⁾ 윤선태,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쯔게(買新羅物解)'>(《역사와 현실》24, 1997), 47쪽 참조.

⁵⁵⁾ 金恩淑、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 (《國史館論叢》 29, 1991) 참조.

^{56) 《}續日本紀》 권 29, 稱德天皇 神護景雲 2년 9월 갑자.

경이 되었다. 憲德王 2년(810) 무렵 신라의 상인들이 빈번히 일본 구주지방에 표착한 것이나 그 이듬해에 신라의 運糧船人들이 해적들에게 약탈당하여 일본에 표착한 사실, 그리고 9세기초 일본의 구법승 圓仁이 중국 양주에서 만났던 신라 상인 王請과 王宗이 일본과의 교역을 통하여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 및 신라 상인들이 중국 양주 등지에서 일반물품이나 시문・미술품 등 신라 귀족들의 취향에 맞는 물품을 사들여갔다는 점 등은 당시 활발하였던 신라 해상들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이들 해상들은 최초에는 長春과 같이 국내물품의 해운에 종사하다가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부응하여 눈을 해외로 돌림으로써 일본에 신라와 당나라 및 동남아 물품을 제공하는 유일한통로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당나라 또한 안사의 난(755~763) 이후 지방통제가 이완됨으로써, 建中 원년(780) 10월 민간 사무역을 금지하는 당 황제의 칙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역이 번성하였다. 특히 8세기 중·후반 신라의 정치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숱한 신라 유이민들이 당나라에 건너가 수도권을 비롯하여 내륙수운의 중심지와 중국 연해안지대를 따라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신라와 발해에서 長安에 이르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산동반도 일대는고구려계 유민 출신인 李正己 일가가 점유하여 사실상 독립적인 정치체를 형성함으로써, 발해와 신라를 상대로 한 사무역을 통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57)

그런데 신라로서는 친발해적인 성향의 이정기가문이 장안으로 통하는 통로를 점유함으로써 불편함이 있었고, 또한 당시 신라 서남해안에는 많은 유이민들과 해운에 종사하는 해상들을 노리는 중국의 해적들이 창궐하여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때에 중국은 지방 번호들을 토벌하고자 하였고, 그 가운데 이정기가(季師道)를 토벌하는 선봉부대인 武寧軍의 고급 장교로 복무하였던 장보고는 元和 14년(819) 2월 토벌을 완수함으로써 공백상태가 된 산동반도 일대의 상권에 대한 모종의 야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야심은 중국내 주요 경제적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은 신라인들을 하나의 체계하에 편

⁵⁷⁾ 李基東, 〈張保皐와 그의 海上王國〉(《張保皐의 新研究》, 1985; 《新羅社會史研究》, 一潮閣, 1997, 201~211零).

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신라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처한 문제, 곧 중국 해적들의 신라인 掠賣 문제해결 등의 현안과 맞물려 홍덕왕 3년(828) 4월 장보고를 淸海鎭大使에 임명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신라조정으로서는 친신라계의 인물이 장안으로 통하는 관문을 점하는 것이 유리하였고 아울러 신라의 두통거리였던 중국 해적선의 소탕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장보고로서는 청해진을 설치함으로써 중국 山東半島의 登州 赤山村과 일본 博多를 연결하는 중간 거점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동북아 삼국의 교역망을 하나로 엮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58) 사실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로 신라 서남해안에는 해적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었고, 신라당은포로부터의 중국 최초의 기항지인 산동반도 등주 적산포 등을 거점으로하여 중국 河南道의 密州와 海州를 거쳐 淮南道의 楚州・泗州・漣水・揚州등지에 분산되어 있는 신라의 무역상들을 하나의 교역망에 편제함으로써 당 -신라-일본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지배 내지 영향력하에 두는 해상왕국을 건설하였던 것이다.59)

장보고는 당나라에 대해서는 「大唐賣物使」, 일본에 대해서는 「廻易使」라는 이름 아래 교역사절단을 파견하고 그의 무역선을 交關船이라 일컬었는데, 각각 중국과 일본정부의 용인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장보고의 회역사가 갖고 온 「唐物貨物」은 인기가 매우 높아 이를 구매하기위하여 예약 대금으로서 絁를 무역지점에 미리 납부해야 할 정도였다.

결국 장보고의 교역은 한・중・일을 연결하는 삼각무역의 형태라 할 수 있는데, 발달된 신라선을 바탕으로 하여 주로 당나라와 신라, 동남아의 물산을 중계무역하는 轉運의 형태였다. 특히 일본에 대하여는 신라와의 공무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선진문물의 수용 창구로서, 신라에 있어서는 왕실 근친에 한정되었던 공무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반 귀족들의 중국과 동남아 물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물품 가운데 일부는 궁중수 공업장에 들여가 가공함으로써 당나라에 대한 공물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興德王陵碑〉에 보이는 '貿易之人間'은 기실 흥덕왕 자신이 청해진을 설치

⁵⁸⁾ 李永澤,〈張保皐海上勢力에 관한 考察〉(《韓國海洋大學論文集》14, 1979), 24쪽.

⁵⁹⁾ 李基東, 앞의 글, 215쪽.

하여 무역을 장려하였던 측면을 보여준다면, 興德王 敎書에 보이는 사치풍조의 만연에 대한 경계는 자신이 후원하였던 장보고의 활동으로 인하여 외국물산의 만연과 신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리 곧 골품체제의 붕괴에 대한염려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신라 집권층에서 바라보는 상반된 두가지의 태도는, 장보고가 청해진세력을 바탕으로 하여 신무왕을 옹립하고 중앙정치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정치적 알력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결국 장보고가 문성왕에게 딸을 왕비로 들이려 할 때 중앙 진골귀족들이 신분의 미천함을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표출되어 文聖王 3년(841) 그의 피살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장보고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이 기존의 골품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중앙귀족들에 의한 장보고의 숙청은 신라사회의 지배원리곧 골품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진골귀족들의 자구책이었다.60)

장보고가 피살되었다고는 하나 海商들의 사무역은 그치지 아니하고 군소해상세력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圓仁이 일본으로 되돌아갈 때 신라 상선을이용했다는 것이나 일본측 사료에 보이는 신라 상선들에 관한 기사, 그리고大中 7년(853) 일본 천태종 승려인 圓珍의 입당에 신라인 해상 金良暉・王超의 상선을 이용하였다는 기사, 新羅僧 大通이 景文王 6년(866) 귀국할 때에 廻易使 陳良의 선편을 이용하였다는 사실 등은, 서남해안 지방의 군소 해상들의 활동이 장보고의 몰락을 계기로 하여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사실 산동반도 등주 지역에는 문성왕 7년(845) 무렵에 신라인張詠이 勾當新羅所押衙로,光化 4년(901)에는 金淸이 押衙로 각각 있었으며,天成 2년(927) 무렵에 신라인 張希嚴과 李彦謨 등이 각각 前登州都督長史와前登州知後官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장보고의 사후에도 등주 지역에 신라의 교민사회가 의연히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61)

이들 군소 해상들은 9세기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자 유력 해상세력을 중심으로 새로이 편제됨으로써, 신라말 고려초의 새로운 사회세력인 豪族으로 성장하였다. 예성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松嶽지역의 王建가문과 白州의 正朝 劉相晞, 貞州 포구를 중심으로 한 柳天弓, 羅州의 多憐君, 靈巖의 최

⁶⁰⁾ 李基白, 〈上大等考〉(《歷史學報》19, 1962; 앞의 책, 125~126쪽).

⁶¹⁾ 李基東,〈羅末麗初 南中國 여러나라와의 交涉〉(《歷史學報》155, 1997), 4~12쪽.

씨가문, 壓海島의 能昌, 槥城의 朴述熙와 卜智謙가문, 康州의 王逢規, 蔚山의 朴允雄 등은 나말려초에 해상세력으로서 성장한 대표적인 호족들이었다.62) 특히 이들 세력 가운데 왕봉규와 같은 이는 독자적으로 後唐에 사신을 보내 어 외교관계를 맺을 정도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63) 더욱이 후삼국이 분립하 던 당시 왕건과 견훤이 吳越 및 閩國과 교섭한 것은 공식적인 사신왕래보다 는 오히려 민간수준에서 진행된 교역과 각종 문물의 수용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바,64) 나말려초 민간인들이 주도한 대외무역의 융성함을 볼 수 있다.

결국 후고구려 궁예의 휘하에서 예성강 하구 가까운 정주를 거점으로 서해안을 控制하면서 槥城·羅州·靈巖·珍島 등 서해안 일대의 해상세력가들을 자신의 휘하에 결집하는 데 성공한 왕건은, 서남해안의 해적을 소탕하는 한편 후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장보고 때에 좌절된 해상세력의 중앙 정치무대 진출의 꿈을 달성하였다. 이에 새로 개창한 고려는 어떤 왕조보다도 해상의이익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고려시대의 무역은 매우 번성하였으며, 고려의 개창자인 왕건이 웅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던 예성강 하구는 동북아시아의 국제 무역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다.

〈朴南守〉

2. 귀족의 경제기반

신라 골품제사회에서 귀족은 골품에 따라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관직에 나아가 근무한 대가로 귀족은 祿邑・祿俸・文武官僚田 등을 지급받아 경제적 풍요를 누렸다.《新唐書》新羅傳에 보면 당시 귀족의 삶이 잘 그려져 있다.

⁶²⁾ 鄭淸柱, 〈호족세력의 대두〉(《한국사》11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국사편찬 위원회, 1996), 82~90쪽.

⁶³⁾ 金庠基、〈羅末 地方群雄의 對中通交〉(《黃義敦先生古稀紀念 史學論叢》,東國大, 1960) 참조.

⁶⁴⁾ 李基東, 앞의 글(1997), 12~22쪽.

宰相家에는 蘇이 끊이지 않으며 奴僮이 3천인이고, 甲兵과 소·말·돼지도이와 비슷했다. 바다 가운데 산에 목축하여 필요한 때에 활로 쏘아서 잡아먹었다. 곡식을 남에게 꾸어주어 늘이고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新唐書》권220, 列傳 145, 東夷 新羅).

이 기록에서는 비록 宰相家라 하였지만, 당시의 일반 귀족관료도 국가로부터 禄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녹에는 녹읍이나 녹봉뿐만 아니라문무관료전도 포함된다고 본다. 아울러 당시의 귀족은 국가에 공을 세운 대가로 食邑을 받았으며, 엄청난 규모의 私有地와 牧場, 그리고 隷民과 私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유지와 목장, 식읍·녹읍·녹봉·문무관료전, 그리고 예민과 사민 등이 당시 귀족의 경제기반이었다고 하겠다.1)

1) 사유지와 목장

통일신라에서 모든 토지는 王士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진평왕 30 년(608)에 圓光이 乞師表를 지으라는 왕명을 받고 "貧道가 大王의 토지에 있어 대왕의 水草를 먹으면서 어찌 감히 명령을 따르지 않으리까"하고²⁾ 대답한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崇福寺碑〉에 '陵(九原)을 이룩한 곳이 비록 王士라고는 하나, 실상 公田이 아니므로 능의 주위에 있는 부근 일대를 일괄하여 善價로 구하였다'고 한 표현을 통해서, 왕토사상은 관념적 형태로 존재하였고 공전이 아닌 토지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차지할 수 없어 값을 주고 구입해야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³⁾ 이는 통일신라에서 토지의 사적소유가 광범하게 인정되었음을 나타낸다.

당시 귀족은 막대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다. 智證大師가 安樂寺에 기진한 莊 12區, 田 500結이나, 그 절의 檀越인 端儀長翁主가 藏獲(奴婢)과 함께 시납한 田地.4) 金志誠이 내놓아서 甘山寺를 세운 甘山莊田5) 및 鳳巖寺터가

¹⁾ 이 글의 작성에 盧泰敦, 〈統一期 貴族의 經濟基盤〉(《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6, 134~168쪽)의 글을 참고하였다.

^{2)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30년.

³⁾ 李佑成、〈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1965;《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91), 2~13等.

된 義陽山 中腹의 沈忠의 땅6) 등은 모두 개인의 사유지였다.

지증대사는 그의 비문에 '王都人 金姓子'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500결의 많은 토지를 가진 왕도의 부호로 생각되며, 단의장옹주는 경문왕의 妹로서 진골귀족이고, 김지성은 6두품이며, 심충은 지방의 유력자였다.7) 이런 사실은 통일신라의 귀족이 막대한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유지는 寄進・상속・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였다. 귀족이 토지를 사원에 기진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으나, 가난한 백성도 토지를 기진하였다. 大城母子가 남의 隷民으로서 자기의 傭田(사유지)을 절에 시주한 예가 그에 속한다.8) 지증대사는 그의 莊田을 회사할 때에 "내집이 가난치 않았으나 親族黨이 모두 죽었으니 나의 재산이 낮모르는 타인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친족당이 살았으면 재산이 그들에게 상속될 것임을 나타낸다.9) 사유지의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은 海印寺와 開仙寺가 토지를 매득한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해인사는 현강왕 6년(880)·8년·11년과 진성왕 5년(891)·8년 등에 걸쳐 여러 곳의 전장을 매득하였는데, 전장의 매입을 적은 田券 43폭이 조선 성종 22년(1491)까지도 전해져 왔음이 曹偉의 文集(《梅溪集》)에 전하고 있다.10) 또 전남 담양군에 있는 〈開仙寺石燈記〉에도 진성여왕 5년(891)에 畓을 매입한 기록이 전한다.11) 이는 귀족이 토지의 상속이나 매입을 통해 사유지를 확대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귀족의 사유지 확대는 상속이나 매입 이외에 왕실로부터 賜田과 개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사전은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고, 문무왕 2년(662)에는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本彼宮의 재화·노복과 함께 田莊을 주었으며, 3년에는

^{4)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80쪽.

^{5)〈}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朝鮮金石總覽》上), 35\.

^{6)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上), 80쪽.

⁷⁾ 崔柄憲,〈新羅 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韓國史研究》7, 1972), 107쪽.

^{8)《}三國遺事》 권 5, 孝善 9, 大城孝二世父母.

^{9)〈}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上), 80쪽.

¹⁰⁾ 今西龍、〈加耶山海印寺の新羅時代の田券に就いて〉(《新羅史研究》,東京: 近澤 書店、1933)、539~544\\\\\\$

旗田巍、〈新羅・高麗の田券〉(《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法政大出版局,1972),175 ~184等.

¹¹⁾ 黄壽永, 《韓國金石遺文》(一志社, 1976), 227~228\.

김유신에게 田 500결을 주었다.12) 그리고 來附해 온 백제·고구려의 귀족에게도 田地를 주었다.13) 또한 성덕왕이 그의 비 成貞王后를 출궁시킬 때에도 彩와 租·寶 등과 함께 전 200결을 賜하였다.14) 이는 귀족이 왕실로부터 사전을 받아 소유하였음을 나타낸다.

귀족은 각지에 田莊을 두었는데, 그들의 거주지 부근 전장은 용작인이나 노비를 동원하여 직영하였고, 거주지에서 거리가 먼 전장은 知莊들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다.¹⁵⁾ 경주에 本寺를 둔 世達寺의 莊舍가 溟州 奈李郡에 있어 본사에서 지장을 파견하였던 예가 이에 속한다.¹⁶⁾ 또한 지증대사의 莊 12區·田 500결도 그 규모로 보아 각지의 전장에 지장들을 파견하여 관리하였을 것이다.¹⁷⁾ 이처럼 귀족은 지장을 파견하여서 전장을 관리하였는가 하면, 隸民을 부려서 토지를 개간하여 사유지를 확대시켰다. 당시 귀족의 예민 규모를 《新唐書》신라전에서는 재상가의 奴僮이 3천 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하지만 재상이 아닌 진골귀족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노비를 소유하였을 것이다. 노비의 노동력과 풍부한 재력을 가진 귀족은 개간을 통해 토지를 늘이기도 하고, 농민의 토지를 점탈하는 경우도 많았다.

《新唐書》신라전에 의하면 당시 귀족은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長興 3년 (932)에 견훤이 해로로 예성강 연안을 공격하여 猪山島의 牧馬 300필을 노획하여 갔다고 한 기록이나18) 武州 남쪽 丘草島에 第三宰相의 목마장이 있고,19)여수 남쪽 鴈島에 內家의 말을 기르는 산이 있었다는 기록은20)海島에 귀족의 목장이 있었다는 《新唐書》신라전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귀족의 목장은 문무왕 9년에 김유신과 김인문 등에게 분급한 馬阹처럼,21)왕실로부터 분급받은

^{12) 《}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2년・권 42, 列傳 2, 金庾信 中.

^{13) 《}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원년 · 권 7, 新羅本紀 7, 신문왕 원년.

^{14) 《}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15년.

¹⁵⁾ 金昌錫, 〈통일신라기 田莊에 관한 연구〉(《韓國史論》, 서울大, 1991), 41~88쪽.

^{16)《}三國遺事》 권 3, 塔像 4, 洛山二大聖.

¹⁷⁾ 盧泰敦, 앞의 글, 152쪽.

^{18) 《}三國史記》 권 50, 列傳 10, 甄萱.

¹⁹⁾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4, 會昌 7년 9월 6일.

²⁰⁾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4, 會昌 7년 9월 8일.

^{21) 《}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9년.

경우도 있으나 귀족이 자신들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만든 경우도 많았다.

2) 식 읍

통일신라 귀족의 경제기반으로 식읍이 있었다. 식읍에는 일정한 지역을 분급하는 경우와 일정한 戶를 수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정한 지역을 식읍으로 수여한 예로는 법흥왕 19년(532)에 來降한 金官國主 金仇亥에게 본국을 식읍으로 주었다는 기록과22) 金周元에게 溟州 管下의 翼嶺縣(양양)・三陟郡・斤乙於郡(평朝)・蔚珍郡 등을 식읍으로 수여하였다는 기록이 찾아진다.23)

戶를 단위로 식읍이 수여된 예로는 문무왕 8년(668)에 백제와 고구려를 병합한 공으로 김유신에게 식읍 500戶를 준 기록이 있고,24) 태종무열왕 3년 (656)에 압독주도독으로 장산성을 구축한 공으로 김인문에게 식읍 300호를 주고, 문무왕 8년에 大琢角干 朴紐의 식읍 500호를 김인문에게 지급한 기록이 있으며, 장보고에게 식읍 2,000호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25) 그러므로 식읍의 분봉에는 김구해나 김주원의 경우처럼 일정한 지역 전체를 식읍으로 주는 경우와 '食邑幾千戶' 혹은 '食邑幾百戶'라 하여 식읍의 戶數를 명기하여封戶를 단위로 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식읍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해당 지역내의 봉호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옳은 듯하다.26) 식읍은 어느 경우에나 국가에 공로를 세운 대가로주어졌다.27) 식읍주는 식읍에서 租・庸・調를 본인 當代에 한하여 직접 수취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식읍을 사사로이 자손・형제에게 분할하거나 상속할수는 없었다.28)

^{22)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9년.

^{23)《}新增東國輿地勝覽》 권 44, 江陵大都護府 人物.

^{24)《}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下.

^{25) 《}三國史記》권 44, 列傳 4, 金仁問 및 권 10 新羅本紀 10, 신무왕 원년.

²⁶⁾ 李景植、〈古代・中世의 食邑制의 構造의 展開〉(《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 論叢》, 1988), 136~139等.

²⁷⁾ 姜晋哲、〈新羅의 祿邑에 대하여〉(《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韓國中世土地所有研究》, 一潮閣, 1989, 36~37等).

²⁸⁾ 李景植, 앞의 글, 140~145쪽.

3) 녹읍과 녹봉

《三國史記》에는 신문왕 9년(689)에 "敎를 내려 內外官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租를 내리되 차등있게 하는 것을 恒式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 경덕왕 16년(757) 3월조에서는 "內外群官의 月俸을 除授하고 다시 祿邑을 賜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매년 지급한 租는 祿俸과 같은 의미로서 녹봉이 처음에는 年俸으로 지급되다가 뒤에는 月俸으로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라정부는 신문왕 9년 이전에는 관료에게 녹읍을 주었으나. 신문왕 9년부터 경덕왕 16년까지는 녹봉을 지급하였고. 경덕왕 16년 이후에 는 다시 녹읍을 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에 흔히 신문왕 9년 이전의 녹 읍을「前期祿邑」, 경덕왕 16년 이후의 녹읍을「後期祿邑」이라고 불러왔다.²⁹⁾ 식읍이 賞賜의 의미를 갖는데 반하여, 녹읍은 관료의 관직복무에 대한 대 가로 지급된 보수로서 祿科의 성격을 지녔다. 녹읍은 縣이나 村 정도의 지역 을 단위로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기준은 관등이었다. 상대등이나 중시와 같 은 최고의 관직자는 현이나 촌을 녹읍으로 지급받았으나, 하위의 관직자는 하나의 촌락을 여러 명의 관료가 공동으로 지배하는 형식의 녹읍을 반급받 았다는 견해가 있다.30) 이에 대하여 歲租가 신문왕 9년(689) 이전에도 지급된 것으로 보면서,31) 높은 관등을 가진 관료는 녹읍을 지급받고 낮은 관등을 가

진 관료는 歲租를 지급받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32) 하지만 大舍 이하의 낮은 관등을 가진 국학의 학생들에게 노거현이 녹읍으로 주어진 사실로 보

²⁹⁾ 姜晋哲, 앞의 책, 9~34쪽.

³⁰⁾ 姜晋哲, 위의 책, 19~20쪽.

³¹⁾ 이는 강수와 김유신의 처에게 歲租를 주었다는 기록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지급한된 세조는 특별한 공훈에 대한 賞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姜晋哲, 위의 책, 11쪽).

³²⁾ 盧泰敦은 귀족가문 출신 관원에게는 녹읍을 주었고, 單門寒族으로서 학식이나 행정능력 및 무예로 발탁된 관원에게 준 蘇이 歲租라고 보았으며(盧泰敦, 앞의 글, 159쪽), 李喜寬은 대아찬 이상 관위를 가진 관료는 녹읍을 지급받고, 아찬 이하의 관위를 가진 관료들은 歲租를 지급받았다고 보았다(李喜寬,〈新羅의 祿邑〉、《韓國上古史學報》3, 1990, 123~124쪽).

면,33) 낮은 관등을 가진 관료도 세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녹읍을 반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낮은 관등을 소지한 관료의 녹읍은 공동지배양식을 취하였을 뿐이었다.34)

녹읍이 공동지배양식을 취하였을 경우에 개별관료에게 분배될 녹읍의 몫은 어떻게 수취되었을까 궁금하다. 또 고급관료에게 지급될 녹읍이 촌을 단위로 하였다면, 大阿湌이 받는 촌의 크기와 伊伐湌이 받는 촌의 규모는 어떻게 차등지워졌는지도 의문이다.

여기서 식읍이 왕권의 제약을 받아 관료적 지배의 형태로 바뀌어진 것이 녹읍이었다는 견해와35) 식읍이 封戶를 단위로 지급되었다는 견해를36) 참고하면, 녹읍의 지급도 실제로는 호를 단위로 지급된 것이 아닐까 한다. 가령관등이 높은 관료는 戶數가 많은 촌락을, 관등이 낮은 관료는 호수가 적은 촌락을 지급받거나, 여러 명이 하나의 촌락을 반급받아서 개개인에게 지급된 녹읍의 호수에 해당하는 몫을 수취해갔을 것으로 헤아려볼 수 있겠다.

그런데 舊族長層에 의한 私的 支配의 전통이 남아 있는 녹읍은 왕권을 중심으로 토지와 농민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 즉 율령제 지배의 관철을 서두르는 통일신라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충되는 면이 많았다.37) 또 불균등한 戶나 그것이 집적된 지역을 단위로 하는 녹읍의 지급도 신라 중대의 율령체제의 정비 혹은 관료제의 진전과는 순응할 수 없었다. 즉 녹읍의 지급이 불균등한 戶나 그런 호가 모여서 구성된 촌을 단위로 이루어진 전기녹읍은 관료에게 관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豫科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신라정부는 관료제의 발전과는 모순되는 고대적 수취체계에 기초한 녹읍을 폐지하고, 문무관료에게 관료전과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녹읍에 대신하여 관료가 관직에 복무한 대가로 주어진 녹봉은 관료제적인 보수체계를 담고 있었다. 녹봉은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현물을 거두어 관료에

^{33)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소성왕 원년 3월.

³⁴⁾ 姜晋哲, 앞의 책, 20~21쪽.

³⁵⁾ 姜晋哲,〈新羅의 祿邑에 대한 若干의 問題點〉(《佛教와 諸科學》, 東國大學校開校80周年紀念論叢, 1987; 앞의 책, 68쪽).

³⁶⁾ 李景植, 앞의 글, 136~139쪽.

³⁷⁾ 姜晋哲, 앞의 책, 69쪽.

게 관등에 따라 지급한 보수체계였다. 아울러 국가가 녹읍을 혁파하고 녹봉을 지급한 사실은 종래의 녹읍에 편제되었던 백성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녹봉의 재원은 백성의 사유지에서 거둔 조세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녹봉의 품목이 米·麥·粟 등이 기본이고 白銀·綾羅·布 등도 지급된 사실을 통해서 보면,38) 신라에서도 백성으로부터 조세와 공물을 거두어 관료에게 관등에 기준을 두어 일정량씩 지급하였다고 보아도좋겠다. 따라서 녹봉에 의해 대체된 녹읍에서 관료는 조세와 공물 그리고 역역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녹봉제는 폐지되고 녹읍이 부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녹읍이 부활된 경덕왕 16년에 바로 州·郡·縣의 명칭이 漢 式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앞서 聖德王 21년(722)에는 당의 균전제를 모방한 丁田制가 시행되었으며, 경덕왕 18년에 는 중앙관제가 唐式으로 개정되었다. 즉 당시의 전반적인 개혁이 율령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면 경덕왕 16년(757)에 부활된 녹읍이 전기녹읍과 같은 형태로 실시되었을지 의문스럽 다. 이러한 의문은 후기녹읍이 전기녹읍과는 다른 보수체계였다고 이해할 때 만 그 논리상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후기녹읍은 율령제적 토 지지배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처였다고 보아야 한다.

현덕왕 7년(815)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新羅帳籍을 통해서 보면, 율령제적 지배질서가 촌락사회 깊숙히 관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39) 신라장적에 보면 국가는 율령의 규정에 따라 烟·人·畓·田 그리고 牛馬·桑·栢子木·秋子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해 놓았다. 또 唐의 균전제에 해당하는 정전제를 실시하고, 그 토지를 烟受有田畓이라 표기했다. 그리고 그 연수유전

³⁸⁾ 李熙德,〈高麗 祿俸制의 研究〉(《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69), 187 ~188\. ~188\.

崔貞煥、〈高麗 祿俸制의 運營實態와 그 性格〉(《慶北史學》2, 1980), 132~140쪽. 39) 이러한 이해방식과는 달리, 녹읍이 부활된 배후 사정을 당시 촌락사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공동체적 관계의 유대가 율령제적 토지지배를 쉽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은 견해도 있다(姜晋哲, 앞의 책, 75쪽).

답의 다과에 따라 9등호제를 실시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촌락을 단위로 計烟數値를 산정해 놓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율령제적 토지지배가 당시 촌락사회 내부에 이르기까지 널리 관철되었음을 보여준다.

후기녹읍은 이러한 율령제적 토지지배를 배경으로 하여 연수유전답 위에 설정되었다. 녹읍주들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는 녹읍으로 지급받은 지역에 있는 연수유전답이었다.40) 국가는 연수유전답의 다과에 따라 孔烟을 9등호로 구분하고 계연수치를 산정하여 조·용·조의 부과 기준치로 삼았다. 공연의 재산상태가 불균등한 데 비하여 계연이 토지 18결을 단위로 편성된 일정한 규모의 課戶라는 점에서 계연이 후기녹읍의 지급단위로 파악되고 있다.41) 후기녹읍이 계연을 단위로 지급되자 전기녹읍에서 나타났던 戶나 村의 규모가 차이에 따라 생기는 모순이 후기녹읍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후기녹읍에서는 計烟 幾余分幾戶와 같은 형태로 녹읍의 지급기준이 정하여졌다. 四余分三戶의 녹읍을 지급받은 관료는 신라장적에 보이는 A촌과 같은 크기의 전답을 소유한 촌락을 지급받았으며, 計烟九戶의 녹읍을 지급받은 관료는 신라장적의 B·C·D촌을 합한 크기만큼의 촌락을 녹읍으로 지급받았다. 이처럼 계연을 단위로 녹읍을 지급하게 되자, 불균등한 戶나 그런 호가 모여서 구성된 촌을 단위로 지급된 전기녹읍에서 발생한 모순같은 것은 없어지게 되었다.

《三國史記》에는 '菁州 老居縣을 學生祿邑으로 삼았다.'고 하여,42) 일정한 지역을 녹읍으로 지급하였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학생녹읍으로 주어진 청주 노거현에도 신라장적에 보이는 공연과 계연이 편성되고, 노거현소속의 각 촌락에도 계연수치가 산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국학의 학생수와 노거현의 계연수치를 참작하여 노거현을 학생들에게 지급한 기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녹읍을 계연이라는 호를 단위로 지급했을 경우에 녹읍의 지배양식은 공동

⁴⁰⁾ 李喜寬, 앞의 글, 127쪽.

⁴¹⁾ 李仁哲,《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의 計烟〉(《韓國史研究》54, 1986;《新羅政治制度史研究》,一志社, 1993, 259零).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역사비평사, 1991), 135쪽.

^{42)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소성왕 원년 3월.

지배의 방식으로 되었을 것이다. 가령 신라장적의 沙害漸村은 田畓의 합계가 164結 12負 4束이었는데, 이는 고려시대의 최고관직인 門下侍中에게 지급된 田柴科 100결(田) 50결(柴地)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따라서 신라의 경우에도 각 행정관부의 장관이나 장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촌 단위에도 이르지 못하는 액수의 녹읍을 받았다고 짐작된다. 이에 자연히 녹읍의 지급은 촌보다 더 적은 호를 단위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하나의 촌락에 여러명의 녹읍주가 생겨나게 되고, 녹읍의 지배방식은 공동지배로 되었다.

녹읍을 공동으로 소유한 녹읍주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녹읍의 戶數 즉, 計烟數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였다. 계연이 조·용·조에 모두 적용되었으므로, 녹읍주는 자연히 녹읍으로 지정된 호에서 租稅·力役·貢賦를 수취하였다.43) 후기녹읍이 율령체제에 입각한 군현제적 지배를 전제로 해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녹읍주의 역역에 대한 지배가 전기녹읍의 그것에 비해 훨씬 미약하였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신라 말기로 접어들면서 녹읍주들의 탈법적인 노동력 착취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그것이 사회혼란의 중요 원인으로 되었다.

4) 문무관료전

신라는 율령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神文王 7년(687)부터 문무관료전제를 실시하였고, 신문왕 9년에는 녹읍제를 폐지하고 관료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문무관료전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신문왕 7년 5월조에

⁴³⁾ 이에 대하여 일짜기 收租權 이외에 노동력까지 지배하였다고 보는 견해(金哲 埃, 앞의 글, 236~239쪽)와 수조권은 물론 貢賦・力役까지 포함한 일체의 수취가 수급자에게 흡수되었다고 보는 견해(姜晋哲, 앞의 책, 17~36・51~74쪽)가 있다. 이와는 달리 녹읍주에 의한 녹읍의 지배는 土地支配(租의 수취)를 제외한 戶口에 대한 지배(노동력의 정발)와 樹木에 대한 지배(貢賦의 수취) 그리고 牛馬에 대한 지배(飼育의 강제)가 주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木村誠,〈新羅の祿邑制と村落構造〉,《歷史學研究》別冊「世界史の新局面と歷史像の再檢討」, 1976, 19쪽), 계연이 녹읍의 지급기준이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明石一紀,〈續・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民衆史研究》13, 1975, 17쪽). 후자는계연수치가 租・調를 제외한 役丁에 기준을 두었다고 보아 녹읍의 수급자는 역정의 使用權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연은 조・용・조 전반에 적용되었다고 봄이 옳다. 아울러 녹봉을 대신하여 녹읍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도녹읍으로 지정된 호에서 녹읍주가 租稅를 수취했다는 사실은 부인될 수 없다.

왕이 "下敎하여 文武官僚에게 田을 내리되 差가 있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신라말까지 문무관료전을 폐지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경덕왕 16년(757) 에 녹읍이 부활될 때에 관료전도 녹봉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44)

그러나 경덕왕 16년에 문무관료전이 폐지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후기녹읍이 전기녹읍과 같은 형태로 부활되었다고 하는 견해와 동일한 논리적 모순에 빠질 우려가 있다. 즉 문무관료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한 목적이 율령제적인 토지제도를 확립하는데 있었다면, 경덕왕대에 율령제를 지향하는 개혁이 국정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율령제를 유지하는 根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무관료전제를 돌연 폐지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어렵다. 다른 모든 제도는 율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형태로 개혁을 단행하면서 유독 문무관료전제만을 폐지하였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덕왕 16년에 문무관료전제가 폐지될 수 없었음은 율령제를 지향한 개혁의 방향에 비추어 너무도 명백해보인다.

더욱이 헌덕왕 7년(815)에 작성된 신라장적에 內視令畓과 村主位畓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문무관료전이 경덕왕 16년(757)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문무관료전이 폐지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사실 그 자체가 실제 문무관료전제가 폐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에 문무관료전은 신문왕 7년(687)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이래로 중간에 폐지되지 아니하고 신라말까지 존속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5)

문무관료전의 성격에 대해서는 신라장적에 보이는 내시령답과 촌주위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내시령답은 內視令이라는 관직을 가진 관료에게 지급된 토지로서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촌주위답은 촌주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토지로서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다. 연수유전답은 소유권이 농민에게 있는 私田이다. 따라서 연수유전답에 포함된 촌주위답도 사전이다. 촌주위답과는 달리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지 않은 내시령답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公田이다. 이는 연수유답에 포함되지 않은 官謨田畓이 고려시대의 공해전에 해당하는 공전이었다는 사실에서 뒷받침된다.

⁴⁴⁾ 姜晋哲, 앞의 책, 7~8쪽.

⁴⁵⁾ 盧泰敦, 앞의 글, 158쪽.

내시령답을 문무관료전이었다고 보면, 신라의 문무관료전은 공전 즉 국유 지 위에 설정된 토지로 파악할 수 있다. 고려시대 공전의 수조율이 4분의 1 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신라 통일기에 문무관료전으로 분급된 공전의 수조율 도 4분의 1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46)

문무관료전이 이름 그대로 문무관료에게만 지급된 토지였는지, 아니면 고려시대의 전시과처럼 官職이나 職役에 종사한 자들에 대하여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였는지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만일 신라의 문무관료전이 고려의전시과에서처럼 관직이나 직역에 종사한 자들에 대하여 토지를 분급하는 제도였다고 하면, 촌주위답도 문무관료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촌주위답이 연수유전답 위에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문무관료전이 연수유전답 즉, 사유지 위에 설정된 토지였음을 나타낸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라의 귀족관료는 많은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는 귀족의 사유지에서도 조세를 수취해야 했다. 귀족이 관직에 나아가 관료가 되면 국가는 문무관료전을 지급해야 했다. 한편으로 귀족의 사유지에서 조세를 거두고, 다른 한편으로 문무관료전을 지급하여 조세를 수취해가도록 하는 번거러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는 촌주위답의 경우처럼 귀족의 사유지를 문무관료전으로 지정하여 조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귀족의 사유지도 연수유전답의 일종이다. 따라서 귀족이 그들의 사유지를 문무관료전으로 지정받았을 경우에 10분의 1세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가령 내시령은 왕경인 출신으로 적어도 4두품 이상의 신분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므로 서원경 지역에 분급받은 내시령답 4결 이외에도 왕경지역에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내시령은 서원경 지역의 내시령답에서 4분의 1조를 수취하고 왕경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는 10분의 1조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문무관료전으로 공전과 사전이 모두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공전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사전의 5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 의 토지를 분급받았다. 여기서 토지를 지급하였다는 말은 收租權(해당 관료의

⁴⁶⁾ 李仁哲,《新羅村落社會史研究》(一志社, 1996), 217\.

사유지를 분급할 경우에는 免租權)을 분급하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무관료전은 해당 관료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죽으면 수조권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토지였다. 하지만 골품에 따라 관직에 진출을 보장한 신라사회에서는 귀족의 자손들이 관직에 나아감으로서 자손 대대로 수조권을 행사하거나, 사유지를 분급받았을 경우에는 면세의 특권을 누렸다.

문무관료전은 관직과 관등에 기준을 두어 지급된 토지였다.47) 주지하듯이 신라에서는 신분등급에 따라 관등·관직에 오를 수 있는 상한선을 규정하여 놓았지만, 특정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을 단일 관등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복수의 官等群으로 묶어 놓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라에서는 같은 관직이라 하더라도 관등이 다르고, 관등이 다름에 따라 경제적 처우도 달랐다고 생각된다. 이에 신라에서는 관료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가 관직보 다는 관등에 기준을 두어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관등에 기준을 두어 관료에 대한 경제적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골품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무관료전을 포함한 녹읍과 녹봉 등의 관료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는 고려의 始定田柴科에서 紫衫・丹衫・緋衫・綠衫의 구분에 의하여 田柴가 지급된 형태와 유사하였다고 생각된다. 48) 신라에서는 골품의 제한 규정에 묶여 승진하지 못하는 관료를 위하여 특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重位制가 마련되었다. 重位의 관등을 받았다고 하여 상급 관직으로 승진할 수는 없었지만, 보수체계만은 별도의 승급규정에 따라 올려받았다. 49) 그러므로 신라의 토지제도는 율령제적 분급체계를 지향하면서도 골품제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족의경제기반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李仁哲〉

⁴⁷⁾ 李喜寬,〈統一新羅時代 官僚田의 支給과 經營〉(《新羅産業經濟의 新研究》13, 新羅文化宣揚會, 1992), 64等.

⁴⁸⁾ 金哲埈、〈新羅 貴族勢力의 基盤〉(《人文科學》7,1962;《韓國古代社會研究》,知 識産業社,1975,233等).

尹漢宅、〈新羅 骨品貴族의 經濟的 基盤〉(《邊太燮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5), 178~193等.

⁴⁹⁾ 李仁哲,〈新羅 律令官制의 運營〉(앞의 책, 1993), 137쪽.

3. 농민의 생활

1) 신라장적

(1) 문서의 성격과 작성연도

西原京(현재의 충북 청주)부근 4개 촌의 사정을 기록한 문서가 1933년 10월에 일본 정창원에서 華嚴經論帙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이 문서를 흔히 신라장적이라 불러왔다. 신라장적은 當縣沙害漸村과 當縣薩下知村이 기록된 문서와 失名村과 西原京□□子村이 기록된 문서 등 모두 2매로 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문서의 기재 순서에 따라 이들 촌을 A촌・B촌・C촌・D촌으로 불러 왔는데, 화엄경논질의 표지를 만들 때 B촌과 D촌의 문서는 끝부분이 잘려나갔고, C촌의 문서는 머리부분이 잘려나갔다. 문서의 크기는 가로 58cm 세로 29.6cm 정도이고, 楮紙로 되어 있다.

신라장적은 縣과 小京의 지배하에 있는 村을 단위로 기재되었다. 戶를 단위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촌을 단위로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장적은 戶籍이 아닌 村籍이라 할 수 있다.2) 문서의 기록은 當式年의 상황을 기재한本文과 당식년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追記로 나누어진다. 장적의 기록은 당시 율령제의 시행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9등호제·계연·남녀 연령별 구분 등은 律令의 戶令과 賦役令에 근거하여 기록되었다. 연수유전답·관모전답·내시령답·마전 등의 설정이나 우마·수목 등에 대한 파악도 田令과 賦役令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3) 기재방식 또한 이 문서가 율령의 규정에 따라 작

¹⁾ 野村忠夫、〈正倉院より發見された新羅の民政文書について〉(《史學雑誌》62-4, 1953), 58等.

²⁾ 旗田巍,〈新羅の村落-正倉院にある新羅村落文書の研究〉(《歷史學研究》226・227, 1958~59;《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72, 420쪽). 이 문서의 성격을 정확히 반영한 명칭은〈新羅熊川州村帳籍〉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명칭이 너무 길어 사용하기에 불편하므로〈新羅村帳籍〉혹은 그냥〈村帳籍〉이라 부르는 편이 적절하다. 문서의 명칭과 성격에 대한 정리는 李仁哲,《新羅村落社會史研究》(一志社, 1996), 64~69쪽 참조.

성된 공문서임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公式令이나 計帳式과 같은 율령의 조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공문서로 생각된다.⁴⁾ 따라서 신라장적은 그 작성 주체가 국가라는 전제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정창원 소장의 신라장적은 소경에 속한 촌과 현에 속한 촌의 사정이 같은 종이에 같은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소경이나 현 가운데 어느 한쪽의 지방행정기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나타낸다. 그렇다고 郡에서 소경관할하에 있는 촌의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신라장적은 군·현·소경보다 격이 높은 지방행정기관인 州司에서 작성한 계장양문서의 기초자료로 작성된 公文書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주사에서는 前式年에 작성한 장적과 當式年에 郡·縣·小京 등 지방행정 단위별로 파악하여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현재 발견된 것과 같은 장적을 만들었다. 정창원 소장의 신라장적이 작성된 당식년은 乙未年이었다. 5) 신라장적에 '乙未年烟見賜'라고 되어 있는 문구는 을미년에 촌의 사정을 조사하였음을 나타낸다. 을미년에 현의 하급관리인 公等이 촌에 나와서 촌의 사정을 조사하여 작성한 문서를 현령의 제가를 거쳐 주사에 보고하고, 주사에서는 전식년의 문서와 당식년에 보고되어온 문서를 토대로 장적을 작성하였다. 을미년에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唐숙에 '造籍以季年 丑辰未戌'이라는 구

田鳳徳,〈新羅律令攷〉(《서울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科學 4,1956;《韓國法制史研究》、서울大出版部、1968、265等).

⁴⁾ 이에 따라 이 문서를 計帳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田鳳德, 위의 책, 1968, 269쪽), 計帳樣文書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촌단위의 集計帳으로 파악하면 서도, 녹읍제적 촌지배를 위한 집계장 혹은 녹읍장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武田幸男,〈新羅の村落支配-正倉院所藏文書の追記をめぐって〉,《朝鮮學報》81, 1976, 230~239쪽 및 木村誠,〈新羅の祿邑制と村落構造〉,《歷史學研究》別冊, 1976, 57~60쪽). 이 문서를 녹읍과 관련지은 근거는 문서에 보이는 內視令 혹은 內省이 이들 촌과 깊은 이해관계에 있다고 파악한 테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들 촌이 내시령의 녹읍이고 A촌에 보이는 내시령답이 내시령에게 주어진 관료전이라면 내시령의 녹읍 안에 있는 토지를 다시 내시령에게 관료전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들 촌을 내시령 혹은 내성의 녹읍으로 파악하는 근거는 D촌의 문서에 잘보이지 않는 글자를「內省」으로 판독한 테 있지만 문제의 글자는 '內'字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⁵⁾ 문서의 작성연도에 대해서는 695·755·756·757·815·816·875·876년 등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들 학설에 대한 연구사는 李仁哲, 앞의 책(1996)에 정리되어 있다.

절을 통해서도 집작이 가능하다. 신라에서도 3년마다 季年(丑辰未戌)에 장적을 만들었던 것이다.

을미년은 60년을 주기로 반복된다. 이에 어느 을미년에 신라장적이 작성된 것인가 하는 점이 지적되어야 하겠다. 우선 신라장적에 보이는 연수유전답이 성덕왕 21년(722)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지급한 丁田일 것이라는 학계의일반론에 따르면, 이 문서는 성덕왕 21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 된다. 경덕왕16년(757)에 '西原小京'이 '西原京'으로 개칭되었는데 D촌이 '西原京□□□村'으로 표기되어 있는 현상 또한 이 문서가 757년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나타낸다. 경덕왕 16년 이후의 을미년으로는 헌덕왕 7년(815)과 헌강왕 원년(875) 그리고 경순왕 9년(935) 등이 있다. 경순왕 9년은 신라가 멸망한 해에 해당된다. 자연히 신라장적의 작성연도는 헌덕왕 7년이 아니면 헌강왕 원년이 된다. 문서의 작성연도를 파악할 때 무엇보다 고려해야 점은 기재 내용의 정밀성이다. 신라의 지방통치체계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이처럼 정밀한 문서가 작성되기 어렵다. 문서의 정밀성으로 보아 신라장적은 헌덕왕 7년에 작성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追記는 당식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현재 정창원에 소장된 신라장적은 당식년(815)에 작성하고, 次式年(818)이 되기 전에 추기를 하여, 차식년(戊戌)의 신라장적 작성에 참고자료로 사용한 후에 20년 정도 보관하였다가 폐기한 문서로 봄이 옳다.

(2) 신라장적과 농민생활

신라장적에는 當縣沙害漸村(A촌)·當縣薩下知村(B촌)·失名村(C촌)·西原京□□子村(D촌) 등 오늘날 충북 청주 부근 4개 촌의 사정이 ①村名・②村域・③烟(戶)·④□・⑤牛馬・⑥土地・⑦樹木 등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6)신라 장적이 州司에서 작성한 공문서라는 점에서 이들 촌은 군현제하의 일반촌이

⁶⁾ 여기서 當縣은 현의 이름 혹은 '本縣'이라는 뜻으로 쓰인 용어가 아니라 '同縣' 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즉 한번 縣名을 정식으로 기록한 다음에, 그에 이은 같 은 현에 속한 촌명에는 앞의 촌과 같은 현에 속한 촌이라는 뜻으로 '當縣'이라 표기하였다.

며 그 주민도 일반농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신라장적은 신라 통일 기 국가권력의 농민지배실태와 농민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이 문서에는 周 …步라고 하여 촌의 둘레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미터법으로 계산하여 촌의 둘레와 면적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 —	۸.	- -		~ I	-1-1
〈丑	-1.	> 존의	둘레	와	면석

	둘	레	추정실제길이	반 지 름	면적
Α	(沙害漸村)	5,725步	10.305km	$1.640\mathrm{km}$	8.445km²
В	(薩下知村) 古	合 12,839步 地 8,770步	23.094km 15.786km	3.677km 2.514km	24.099km² 18.845km²
	掘加利何木杖谷	地 4,060步	7.308km	$1.164 \mathrm{km}$	4.254km²
С	(西原京□□子村)	4,800步	8.640km	1.376km	5.945km²

위와 같은 면적의 촌역에는 가옥이나 경작지는 물론 주변의 산천까지 포함되었다.8) 촌역과 촌역 사이에는 어느 촌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B촌의 문서에 보이는 掘加利何木杖谷地가 바로 그런 곳이다. 굴가리하목장곡지는 당식년에 薩下知村古地의 촌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이다. 그럼에도 B촌의 문서에는 孔烟이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는 굴가리하목장곡지에 본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烟에는 공연・計烟・等級烟・三年間中收坐內烟・廻去烟 등이 있다. 장적에는 合孔烟의 數가 A촌 11, B촌 15, C촌은 알 수 없고, D촌 10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합공연의 수는 등급연과 등외연(三年間中收坐內烟)의 수를 합한수치와 일치한다. 이는 등급연과 등외연이 모두 공연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등급연은 仲下烟・下上烟・下仲烟・下下烟 등으로 기재된 연을 말한다. 그기재 방식으로 보아 仲仲烟・仲上烟・上下烟・上仲烟・上上烟 등의 등급연

⁷⁾ 李喜寬、〈新羅村落帳籍에 보이는 村의 性格〉(《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4), 382~406쪽.

⁸⁾ 旗田巍, 앞의 책, 424쪽.

李宇泰,〈新羅「村落文書」의 村域에 대한 一考察〉(《金哲埈博士華甲紀念 史學 論叢》, 1983), 141쪽.

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장적이 작성될 당시에 9등호제가 실시되었음을 나타낸다. 신라의 9등호제에 대해서는 人丁의 多寡에 따라 구분되었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⁹⁾ 그러나 인정의 다과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문서 자체에 개별적으로 전입해온 사람은 등급연에 편제되었으나 烟을 단위로 전입해 온 사람들은 등급연에 편제되지 않고 등외연으로 남겨 놓은 사정을 설명할 수 없다. 이에 신라 9등호제에서 戶等은 재산(토지)의 다과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¹⁰⁾ 장적에 기재된 4개 촌의 농민또한 중하연 이하의 下等烟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신라 통일기의 전체烟戶들 가유데서도 가난한 농민이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三年間中收坐內烟은 '3년 사이에 거두어 앉힌 연'이라는 뜻의 이두로 3년 사이에 새로 이사온 연을 나타낸다.¹¹⁾ 회거연은 '돌아 가버린 연'이라는 뜻의 이두로 이사해 간 연을 가르킨다. 삼년간중수좌내연 즉, 등외연은 장적에 기재된 연의 구성으로 보아 자연호였다. 하지만 등급연은 編戶였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공연은 대부분 편호였다.¹²⁾

計烟은 '계산한 연'이라는 뜻인데, 각 등급연에 1/6, 2/6, 3/6, 4/6, 5/6, 1 등의 기본수를 설정하여, 이를 등급연의 수와 곱하여 합계를 낸 뒤에, 이를 다시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나온 몫과 나머지를 표기한 수치로 표기하였다.¹³⁾ 촌별 계연수치의 산정내용은 〈표 2〉와 같다.

⁹⁾ 旗田巍, 위의 책, 430쪽. 明石一紀, 〈統一新羅の村制について〉(《日本歴史》322, 1975), 29쪽.

¹⁰⁾ 李仁哲,〈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의 計烟〉(《韓國史研究》54, 1986;《新羅政治制度史研究》,一志社, 1993, 231~259쪽).

허종호,《조선토지제도발달사》1(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206~210쪽. 이외에도 토지에 우마와 노비를 합친 재산의 다과에 따른 구분으로 파악하는 견해(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119쪽), 토지와 인정의 다과에 의해 구분되었다고 보는 견해(李仁在,《新羅統一期 土地制度研究》, 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95, 142~145쪽) 등이 있다. 자세한 연구사 정리는 李仁哲, 앞의 책(1996) 참조.

¹¹⁾ 南豊鉉,〈正倉院 所藏 新羅帳籍의 吏讀 研究〉(《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92), 33等.

¹²⁾ 李泰鎭,〈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의 孔烟-正倉院 所藏의 村落文書 재검토〉(《韓國史研究》25, 1979;《韓國社會史研究》,知識産業社, 1986, 29~42\).

¹³⁾ 李泰鎭, 위의 책, 45쪽.

〈丑 2〉

계 연 산 정

	田結數	基本數	A村	B村	C村	D村
仲 上	(24-6) 18	1				
仲 仲	(21-6) 15	5/6				
仲 下	(18-6) 12	4/6	×4=16/6	×1=4/6		
下上	(15-6) 9	3/6	×2=6/6	×2=6/6	(×3=9/6)	
下 仲	(12-6) 6	2/6	×0=0	×5=10/6	×1=2/6	×1=2/6
下下	(9-6) 3	1/6	×5=5/6	×6=6/6	×6=6/6	×9=9/6
合 計			27/6	26/6	17/6	11/6
	몫 … 나머기	<u> </u>	4…3	4…2	25	1…5
	文書의 表記	2	四余分三	四余分二	(二余分五)	一余分五

신라의 9등호제는 연수유전답의 다과에 의해 구분되었고, 호등에 일정한 기본수를 설정하여 계연수치를 산정하였다.14 신라정부는 이 계연수치를 촌 별로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는 기준수치로 삼았다.15) 촌장적에 '余子' '法私' 등의 기록은 이들 촌락의 농민이 법당에 편성되어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16)

촌민은 크게 양인과 노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양인남자는 丁・助子・追子・小子・除公・老公으로 연령등급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양인여자는 丁女・助女子・追女子・小女子・除母・老母로 나누어 그 숫자를 기록하였다.17) 노비는 연령별 명칭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양인의 연령층에 맞추어 기재하였다. 노비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서원경(청주) 부근의 마을에 상당히 많이 기재되어 있음은 당시에 노비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14) 〈}표 2〉에서 전결수는 등급연의 토지결수 하한에서 6결을 감산한 값이다.

¹⁵⁾ 計烟數置에 대해서는 村別 力役의 부과기준이 된 수치였다는 견해도 있다(旗田 巍, 앞의 책, 1972, 430쪽).

¹⁶⁾ 李仁哲、〈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韓國史研究》61・62합집,1988; 앞의 책, 313~314等).

¹⁷⁾ 연령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해가 제시되었다. 이를 정리한 글로 浜中昇、〈統一新羅の年齢區分と稅制〉(《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1986,38~65쪽)와 李仁哲, 앞의 책(1996),282쪽이 있다.

〈표 3〉 당식년의 촌별 인구

			A	В	С	D	計
合	孔	烟	11	15	?	10	47
台		人	147(9)	125(7)	72(0)	118(9)	462(25)
	丁		29(1)	32(4)	19	19(2)	99(7)
助		子	7(1)	6	2	9(2)	24(3)
追		子	13	2	8	8	31
小		子	16	5	11	13	45
除		公	1	0	0	0	1
老		公	0	2	0	2	4
丁		女	42(5)	47(3)	16	38(4)	143(12)
助	女	子	11(1)	4	4	6	25(1)
追	女	子	9	14	4	12(1)	39(1)
小	女	子	16(1)	10	7	11	44(1)
除		[]:	2	1	0	0	3
老		[] :	1	2	1	0	4

촌의 인구에서 나타나는 최대의 특징은 여자의 숫자가 남자의 숫자에 비해 무려 44명이나 많다는 사실이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소자와 소녀자의 숫자가 비슷하여 이들 촌에 여자가 많았던 까닭이 남녀간의 출생비율이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제공과 노공의 연령층의 인구가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하여 당시의 농민이 제공의 연령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 사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농민이 丁의 연령층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정보다 정녀의 숫자가 많은 까닭도 정의 연령층에서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보다 짧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兵役에 징발되어 촌을 떠나있는 丁이 많거나 그것의 징발을 기피한 남자의 숫자가 많았던 것도 이들촌에 여자가 많았던 사유가 될 것이다.18)

촌장적에는 호구의 이동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국가가 재산의 다과에 따라 9등호제를 실시하고, 계연수치를 산정하여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함에 따라 호구를 자세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¹⁸⁾ 旗田巍, 앞의 책, 437쪽.

이었다. 농민은 다른 촌락으로 전출하려고 할 경우에 관아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합법적인 전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을에서 무단이탈하였는데, 국가는 이 같은 농민의 이동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3년 동안의 전입자수와 전출자수를 보면, 전입자는 총 20명으로, 남녀의 숫자가 같다. 전출자는 총 31+a명으로 남자가 15+a명, 여자가 16+a명이다. 전체적으로 전출자의 숫자가 전입자보다 11명 이상 많지만, A·B·C 촌의 경우에는 전출자와 전입자의 숫자가 비슷하여, 문서에 기재된 농민의이동이 평상시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19) 단지 D촌에 전출자가 다른 촌에 비해 월등히 많아서 4개 촌 전체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게 나타날 뿐이다. 追記時의 전출자는 17명 정도이고, 사망자는 약 4명이었다. 추기시에는 호구의 감소만을 파악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에 호구의 증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추기시에 전출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도 D촌에서 공연이 하나 감소하였는데 그 호구가 11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20) 4개 마을 전출입 인구가많지 않은데 D촌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일반화하여 설명하게 되면 통계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D촌을 제외한 A·B·C촌의 경우를 놓고보면, 신라장적이 작성된 헌덕왕 7년(815)경에 농민이 촌락을 이탈하여 유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신라장적에는 많은 수의 牛馬가 기재되어 있다. 소가 많이 기재되어 있음은 당시 경작활동에 소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고, 馬가 많이 기재되어 있는 까닭은 이들 촌에 軍馬의 사육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21) 문서에는 농민이 사적으로 소유한 우마도 상당수 있었음이 드러난다.

¹⁹⁾ D촌의 전출자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三國史記》권 10,新羅本紀 10, 현덕왕 7년(815)조에 "西邊州郡에 큰 기근이 있어 도적이 봉기하니 군대를 내어 토평하였다"는 기록과 관련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武田幸男, 앞의 글, 1976, 249쪽). 하지만 서원경 관할하에 있는 1개 촌의 인구감소가 당시의 서변 주군에서일어났던 농민반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 &}quot;孔亡廻一 合人十一 以丁二 助子一 小子二 丁女二 助女子一 追女子二 小女子 一"로 기록된 공연의 구성으로 보아 두 개의 자연호가 합쳐져서 하나의 공연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형제의 부부와 그들의 자식이 하나의 공연을 구성하고 있다가 함께 移去한 경우로 헤아려진다. 두 개의 자연호가 하나의 공연을 이루고 있다가 이거한 경우이다(李泰鎭, 앞의 책, 34쪽).

²¹⁾ 旗田巍, 앞의 책, 449쪽. 한편 이들 촌 자체를 왕실직속지였다고 보아, 왕실이

이들 사유 우마의 증가분 가운데 일부는 雜調로 국가에 바쳐졌던 것이 아닐까 한다. 토지는 烟受有畓·烟受有田·官謨畓·官謨田·內視令畓·村主位畓 ·麻田 등으로 地目을 나누어 그 田結數가 기재되어 있다.

⟨표 4⟩

지목별 토지결수

지			목	A 촌	B 촌	C 촌	D 촌
烟	受	有	畓	94결 2부4속	59결98부2속	68결67부	25결99부
烟	烟受有日		田	62결10부5속	119결 5부8속	58결 7부1속	76결19부
官	官 謨		畓	4결	3결66부7속	3결	3결20부
官	官 謨		田				1결
内	視	令	畓	4결			
村	主	位	畓	19결70부			
痲			田	1결 9부	1결 6부	1결 2부	1결 8부

연수유전답은 연이 국가로부터 받아서 소유한 전답이라는 의미로서,²²⁾ 丁田制의 시행에 따라 나타난 표현이다. 그러나 정전제는 실제로 토지를 분급한 제도가 아니어서, 연수유전답은 백성이 본래부터 소유해온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공연을 단위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 백성에게 한시적이고 제한적인소유권을 인정해준 토지 지목이었다.²³⁾

관모전답은 고려시대의 公廨田과 유사한 토지였다.²⁴⁾ 내시령답은 내시령에게 지급한 관료전으로, 임기를 마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면 국가

직속지인 촌락에 왕실소유의 말의 사육 의무를 부과하고, 촌락들이 보유하고 있는 답의 경작을 위해 축력으로 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문서에 많은 수의 우마가 표기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李泰鎭,〈新羅 村落文書의 牛馬〉,《碧史李佑成教授定年紀念論叢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1990, 126~150쪽).

²²⁾ 이에 대해서는 신라 통일기에 均田制가 실시되었다는 입장에서 연구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으나(崔吉城,〈新羅における自然村落的均田制〉,《歷史學研究》237, 1960, 40~47쪽 및 兼若逸之,〈新羅『均田成冊』의 研究〉,《韓國史研究》23, 1979, 65~114쪽), 균전제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旗田巍, 앞의 책, 450쪽 및 浜中昇,〈統一新羅における均田制の存否〉,《朝鮮學報》105, 1982; 앞의 책, 88~120쪽).

²³⁾ 李仁哲, 앞의 책, 225~240쪽.

²⁴⁾ 李喜寬,〈統一新羅時代의 官謨田・畓〉(《韓國史研究〉66, 1989), 29~46쪽.

에 반납해야 하는 토지였다.25) 촌주위답은 촌주의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토지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촌주위답이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촌주위답은 촌주의 연수유전·답에 부과되는 租를 면제받은 토지였다.26) 마전은 마포를 공납으로 수취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토지였다.

신라장적에는 뽕나무·잣나무·호도나무 등의 숫자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들 수목 가운데 桑은 正調로, 栢·秋는 雜調로 각기 그 수확물의 일부가 수취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⁷⁾

요컨대 신라장적에 기재된 촌민은 그들 자신의 전답에 대해 無限永代的 소유권을 가진 바탕 위에 공연을 단위로 限時的이고 制限的인 土地所有權을 인정받아 경작하고 국가에 조·용·조와 군역의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농민이었다. 전답의 면적은 후대에 비하여 상당히 넓어서 휴한법에 의해 토지를 경작하였다. 국가는 공연의 토지소유에 근거하여 9등호제를 실시하고, 촌별로 계연수치를 산정하여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당시의 농민은 토지에 긴박되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채, 국가로부터 각종조세와 부역의 의무를 강요당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2) 촌락과 농민의 지위

신라 통일기에 촌을 직접 지배하는 지방행정조직으로는 領州, 州의 領縣, 영현이 없는 郡, 郡治로서의 郡, 郡의 領縣, 小京 그리고 鄕과 部曲이 있었 다. 촌은 이들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연결되고 있었다.

신라장적에 기록된 村周를 통해서 보면, 중앙에서 가장자리까지 거리가 1.376km에서 3.677km정도였다. 촌의 지름은 2.752km에서 7.354km가 된다. 원의 중심부에 촌이 자리잡았다면, 촌과 촌간의 거리는 4km 정도가 된다. 그러나

²⁵⁾ 李喜寬,〈統一新羅時代 官僚田의 支給과 經營〉(《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3, 慶州文化宣揚會, 1992), 55~89\.

²⁶⁾ 李喜寬,〈統一新羅時代의 村主位田·畓과 村主勢力의 成長〉(《國史館論叢》39, 國史編纂委員會, 1992), 85~91\.

²⁷⁾ 石上英一, 〈古代における日本の税制と新羅の税制〉(《朝鮮史研究會論文集》11, 1974), 73~109等.

촌과 촌 사이에는 어느 촌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6km정도의 간격을 두고 촌이 자리잡고 있었다. 지름이 3km에서 5km(반지름은 1.5km에서 2.5km정도)되는 촌역 안에는 가옥과 경작지 그리고 임야 등이 있었다. 이처럼 촌락간의 거리가 멀고 촌역이 넓었기 때문에 당시의 농민은 다른 촌락의 농민과는 소원한 관계였고, 촌락내에서 대부분 인간관계를 다지며 생활하였던 것으로 집작된다.

촌의 戶數는 孔烟을 자연호로 보면, 신라장적에 보이는 촌은 각기 A촌이 11호, B촌이 15호, C촌이 11호, D촌이 10호였다. 그러나 공연이 자연호가 몇개 합쳐져서 편성된 편호였다고 보면, A촌은 29호, B촌은 25호, C촌은 14호, D촌은 24호 정도의 촌락이었다고 할 수 있다.²⁸⁾ 이들 촌의 戶數를 평균 30호로 보고, 1호가 차지하는 주거지가 200평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취락이 촌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1결 정도밖에 안된다.²⁹⁾ 따라서 촌역의 대부분은 논·밭·목초지·습지·하천·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을 전체를 둘어싼 토담이나 환호는 없었다. 대신에 촌 주변의 야산에 土城 혹은 石城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상시에는 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 城을 방어수단으로 하여 적에 대항하였다. 성을 단위로 한 방어전에는 法幢이 편성된 최소의 단위가 縣이었던 점을 참고하건데,30) 1개 현에 속한 촌들이 공동으로 적에 대항하였을 것이라생각할 수 있다.

신라장적에 기재된 개별 촌은 자연촌이면서 동시에 행정촌이었다. 국가가 개별 자연촌을 행정상으로 파악하여 문서로 작성하였고, 조·용·조와 군역의 수취를 위한 9등호제와 계연수치를 자연촌별로 완결지어 계산해 놓았다는 사실은 국가가 자연촌 자체를 하나의 행정촌으로 파악하였다는 의미가된다.31) 장적에서 A촌의 촌주는 국가가 행정촌으로 파악한 A촌만의 촌주였

²⁸⁾ 李泰鎭, 앞의 책, 36~37쪽.

²⁹⁾ 姜晋哲의 견해에 따르면, 1결은 6,806평이다(姜晋哲,〈田結制의 問題〉,《高麗土 地制度史研究》, 高麗大出版部, 1980, 371쪽).

³⁰⁾ 李仁哲, 앞의 책, 304~313쪽.

³¹⁾ 장적에 기록된 촌을 自然村으로 보고, 몇 개의 자연촌으로 이루어진 행정촌에 는 村司가 있고, 內視令·村主·軍師 및 屬官 등이 촌사를 구성하고 촌락행정

다. 이에 촌주위답이 없는 촌에는 촌주가 본래 임명되지 않고, 촌주가 임명 된 촌을 통하여 현의 통제를 받았다.

신라장적을 통해서 보면 3~4개 촌 가운데 한개의 촌에만 촌주가 있었다. 따라서 촌주가 관할하는 일정한 행정구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촌주가 3~4개 촌을 관할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竅興寺鐘名〉에 보면, 현에 上村主・第二村主・第三村主라는 3명의 촌주가 있었다. 신라장적에 3~4개 촌 가운데 한명의 촌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1명의 촌주가 3~4개 촌을 관할하였다고 보면, 1개 현에는 9~12개의 촌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당시 현의 넓이를 고려하더라도 1개 현에 12개 촌 이상의 촌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신라장적에 보이는 촌의 넓이는 오늘날 面의 3분의 1 정도이다. 따라서 촌주가 관할하는 범위는 행정촌 3~4개 정도로서 오늘날의 면 정도 넓이였다. 촌주는 縣에서 公等이 파견되어 나와 烟을 조사하여 장적을 작성할 때 공등을 도와주었다. 또 현으로부터 하달된 국가의 명령을 村民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현을 통하여 촌의 변동사항을 국가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 촌주는 조세수취를 도와주기도 하고 역역동원에 촌락민의 대표가 되기도 하였다.

신라장적은 율령제적 농민지배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장적 역시 율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에 장적에 기재된 농민 또한 율령제국가의 公民이었다. 장적에서는 이들 농민을 良人과 奴婢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三國史記》 색복지에서는 4두품 아래의 양인을 平人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라장적에 보이는 대부분의 농민은 관직으로 진출이 제한을 받았다는 점에서 平人으로 볼 수 있다. 평인이 아닌 신분으로는 노비와 촌주가 있었다. 촌주는 4두품 내지는 5두품의 신분적 대우를 받는 존재였다. 같은 촌이라고 하더라도

을 맡아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李鍾旭,〈新羅帳籍을 통하여 본 統一新羅時代의 村落支配體制〉,《歷史學報》86, 1980, 11~54쪽). 그러나〈신라장적〉에는 當縣□□□村이라 하여 자연촌락 자체가 이미 행정촌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종래의 행정촌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浜中昇,〈統一新羅의 家族과 村落〉, 앞의 책, 20쪽). 중국사에서도 行政村이란 국가가 조세징수・치안유지 등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作爲的으로 구성한 촌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松本善海,《中國村落制度の史的研究》, 岩波書店, 1977, 193~195쪽).

州郡縣 혹은 小京의 직속촌에는 진골·6두품·5두품·4두품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4두품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과 軍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촌은 地方官司가 설치되지 않은 촌이었다. 따라서 신라 통일기의 촌락민은 대부분 신분적으로 평인이고 직업상으로는 농민이었다.

신라 골품제사회에서는 4두품 이상의 신분만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平人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율령에 명시된 골품제의 규정에 따라 농민은 피지배신분층으로 고정되었고, 그 신분은 세습되었다. 하지만 평인농민은 양인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노비를 비롯한 賤人이 토지나 재물을 소유할 수 없는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평인 농민이 가진 소유권은 분명히 하나의 신분적 특권이었다.

신라정부는 평인농민에게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그들로부터 조·용·조와 군역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군사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적·군사적 자원을 공급해주는 계층이 농민이었으므로, 국가는 이들 농민의 동태를 상세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다. 신라장적은 국가가 이들 농민의 출생·사망·전출·전입등을 일일이 파악하여 기재해 놓았을 뿐 아니라 농민에게 신고의 의무까지부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장적에는 농민 가운데 촌에서 도망친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촌민들이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국가가 평인의 거주이전을 극도로 제한한 한 데 따른 현상이다. 국가가 평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이유는 농민을 토지에 긴박시켜 놓고, 그들로부터 조·용·조와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여 국가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신라장적에 보이는 연수유전답과 수취체계의 구명이 당시의 농민의 지위를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

「연수유전답」이란 '烟이 받아서 가진 전답'이라는 의미이다. 이때 연에게 전답을 지급한 주체는 국가로 해석된다. 국가가 토지를 지급하였다고 볼 경우에 떠오르는 사항은 성덕왕 21년(722)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丁田을 지급하였다'고 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隋唐의 均田制를 연상하게 하지만, 신라에서

는 균전제가 실시되지 않았다.32)

신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토지가 王土로 인식되기는 하였으나, 개별 토지의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었다. 신라의 토지제도가 토지사유제였다는 사실은〈崇福寺碑文〉이나〈海印寺田庄文書〉 그리고〈開仙寺石燈記〉에 보이는 田券 등에 잘 나타나 있다.33) 이처럼 토지국유제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백성의 私田을 연수유전답이라 하여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지급한 것처럼 신라장적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은 백성이 조상대대로 경작해오던 토지에 대하여국가가 나누어주는 형식을 취하면서 어떤 法制的 認定節次를 취하였음을 나타낸다.34) 따라서 어떤 법제적 인정절차를 거쳤는가 하는 문제가 丁田制 곧연수유전답의 실체 구명에 핵심을 이루고 있다.

'烟受有'라 하여 '受有'의 대상이 烟으로 되어 있음은 정전제에서 土地支給對象이 戶였음을 보여준다. 신라의 정전제는 丁을 대상으로 한 토지지급이 아니라 丁戶를 대상으로 토지의 지급이 이루어진 토지제도였던 것이다. 즉, 孔烟이 국가로부터 받아 가진 토지가 연수유전답이었다. 공연은 자연호가 아니라 몇 개의 자연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編戶였다. 35) 국가는 편호로 이루진 공연을 단위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주었다.

신라정부는 공연의 소유토지에 근거를 두어 9등호제를 실시하고 호등에 따라 조·용·조와 군역의 수취체계를 마련하였다.36) 이에 따라 농민은 공연을 단위로 국가로부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토지소유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조·용·조와 군역을 부담해야 했다. 공연에 부과되는 조세는 지주가 부담하였지만, 역역과 공부 그리고 군역은 佃戶도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정전제를 신라정부가 실시한 데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었다. 우선 자연호를 합쳐서 공연을 편성하여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토지소

³²⁾ 浜中昇、〈統一新羅における均田制の存否〉(《朝鮮學報》105, 1982; 앞의 책, 88~120等).

³³⁾ 旗田巍、〈新羅・高麗の田券〉(앞의 책), 175~207쪽.

³⁴⁾ 姜晋哲、〈韓國土地制度史〉上(《韓國文化史大系》2, 高麗大, 1965, 1202~1220쪽; 앞의 책, 1~17쪽).

³⁵⁾ 李泰鎭, 앞의 책, 25~42쪽.

³⁶⁾ 李仁哲, 앞의 책, 231~259쪽.

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넓은 면적의 토지를 기반으로 농민생활이 전보다 안정되고 재생산기반이 확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편호로서의 공연 은 농민이 개별 자연호로 있었을 단계보다 토지를 처분하고 촌에서 이탈하 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정전제 실시의 목적은 토지의 지급에 있 었던 것이 아니라, 농민을 될 수 있는 대로 농토에 묶어 놓고, 국가가 원하 는 조·용·조를 수취하고 軍役을 부과하여 국가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 에 있었다.

정전제의 실시로 농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토지소유에 실제적인 변동이 일어난 것은 없었다. 그러므로 정전제의 실시로 모든 농민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반급받아 자영농민이 되지도 않았고, 신라장적에 나타나는 농민이 모두 자영농도 아니었다. 농민 가운데는 자영농도 있고, 소작인도 있으며, 남의집에 가서 용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노비도 있었다. 당시의 촌에는 9등호제로 구분된 토지소유의 불평등 이상으로, 자연호의 토지소유가 불평등하였다. A촌의 촌주와 같은 이는 19결 70부의 토지를 소유하였는가 하면, 촌에서 무단으로 도망치는 호구들은 無田農民이었다. 그러므로 촌민은 같은 백성 혹은 평인이라고는 하지만, 토지소유나 소득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즉같은 평인층 가운데서도 사회계층의 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신라 통일기의 촌은 血緣集團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면서도37) 계층분화가상당히 진전된 地緣集團이었다고 생각된다.38)

그러면 당시의 농업생산 실태는 어떠하였고, 농민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三國史記》나《三國遺事》 등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신라시대의 농작물로는 벼・보리・콩・조・기장・채소류・장・호도・살구・복숭아・배・밤・대마・잠사・저마・호마(참깨와 검은 깨)・들깨・인삼 등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농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작물은 벼・보리・콩이었다. 당시의 농업생산은 가뭄・홍수・바람・서리・우박 등기후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뿐 아니라 해충의 피해로도 그 생산성이 떨어졌다. 당시 농업생산을 감소시킨 중요한 요인은 대부분 가뭄과 해충의 피

³⁷⁾ 旗田巍, 앞의 책, 420쪽.

³⁸⁾ 崔吉城, 앞의 글, 39~40쪽.

해였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가뭄의 피해가 가장 컸던 모양이다. 신라정부는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주의 碧骨堤나³⁹⁾ 영천의 菁堤의 증축에서 보는 바와 같이,⁴⁰⁾ 저수지를 비롯한 수리시설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수리시설이 전체적인 농경면적에 비해 너무 적어서 거의 모든 수전경작이 天水에 의존하였다.

토지는 지력이 낮아 휴한법에 의하여 농경이 이루어졌다. 종자의 파종은 이앙법이 보급되지 않아 직파법으로 행해졌다. 농기구로는 보습·쟁기·따비·괭이·쇠스랑·낫·살포·자귀·도끼·호미 등이 사용되었다.41) 철제 농기구의 광범위한 이용은 신라 통일기의 농업생산성을 그 이전에 비하여 크게증대시켰다. 그럼에도 당시의 농업생산성은 여전히 낮았다. 농민은 흉년이들지 않는 해에 한해 식량조달이 겨우 가능하였고, 만일 흉년이라도 들면 당장 식량부족현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뭄이 들거나 벼멸구의 피해가 있는 해에는 그 해 10월이나 이듬해 봄에 백성이 굶주리게 되어 정부에서 진휼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서 산견되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흉년이 든 해의 겨울이나봄에 백성이 굶주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식량생산 사정은 한전과 수전의 생산량이 각기 6개월분의 식량 정도밖에 조달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대부분 농민은 보리밥이나 잡곡밥을 먹고 살았다.42) 고추가 전래되지 않았던 당시에 음식물을 조리하는 데 있어 간장·된장·소금·마늘 등이가장 중요한 조미료였다. 그러나 이러한 식생활도 흉년이 들지 않고, 귀족세력으로부터 식량을 수탈당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흉년이 들게 되면, 굶주리다 못하여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거나,43) 자식을 팔아서 생활하는자가 있었다.44) 그런가 하면 효녀 지은처럼 스스로 몸을 팔아 노비가 되는

^{39)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원성왕 6년.

⁴⁰⁾ 李基白,〈永川 菁堤碑貞元修治記의 考察〉(《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280~294等.

⁴¹⁾ 김광언, 〈신라의 농기구〉(《민족과 문화》1, 한국문화인류학회, 1988), 43~84쪽.

⁴²⁾ 韓致奫,《海東繹史》 권 26, 穀類.

^{43)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왕 16년.

^{44)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50년 및 권 10, 新羅本紀 10, 헌덕왕 13년.

경우도 있었고,⁴⁵⁾ 남의 집에 가서 傭作을 하거나,⁴⁶⁾ 食客이 되어 먹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⁴⁷⁾

정전제는 외관상으로는 공연의 토지소유에 근거하여 조·용·조와 군역의수취체계를 수립한 탓에 자영농을 대상으로 한 토지소유권의 인정과 부세체계의 수립을 기본구도로 하고 있었다. 신라정부는 정전제의 실시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농민을 자영농화하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신라정부가 구상한 정전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촌사회에서 계층의분화가 촉진되면서, 가난한 농민 가운데는 그들의 전답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제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던 중앙의 귀족이나 지방의 호족들은토지를 집적하여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智證大師가 헌강왕 5년(879)에자기의 私財인 莊 12區, 田 500結을 사찰에 희사했다거나,48) 大安寺의 田畓이 494결 39부이고 柴地가 143결, 鹽盆이 43결이었다던가 하는 사실이49) 바로 당시의 대토지소유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토지소유 현상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영농의 몰락을 촉진하였을 것이다.

신라의 정전제에서는 대토지소유를 용인한 채 공연이라고 하는 편호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에 따라 구분된 9등호제에 기준을 두어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일체의 조세가 점차 소작인 등의 토지경작자에게 전가되었다. 지주와 전호를 묶어서 편성한 공연은 가난한 농민에게 가중한 부담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이제 가난한 소농민이할 수 있는 일이란 소작을 하지 않고 小農끼리 하나의 공연을 구성하여 조·용·조와 군역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었다. 신라장적에 하하연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보다 형편이 나쁜 농민은 아예 노비가 되거나 유리걸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농민이 토지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정전제가 붕괴되어짐를 의미한다. 정전

^{45)《}三國史記》 권48,列傳8,孝女知恩.

^{46)《}三國遺事》 · 5, 孝善 9, 真定師孝善雙美·大成孝二世父母 神文代·孫順埋兒 與德王代.

⁴⁷⁾ 盧泰敦, 〈羅代의 門客〉(《韓國史研究》21·22합집, 1978), 25쪽.

^{48)〈}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朝鮮金石總覽》上), 93\.

^{49)〈}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碑〉(《朝鮮金石總覽》上), 120쪽.

제는 농민을 공연으로 편제하여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용·조와 군역을 부가하는 것이었는데, 농민이 토지에서 이탈하여 유리걸식하는 현상은 공연의 편제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토지에서 이탈해간 농민의 몫까지 촌에 남아 있는 농민이조·용·조와 군역을 부담해야 했다. 토지소유에 바탕을 둔 조세는 촌에 남아 있는 농민이 그래도 부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농민이 촌락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力役・貢賦・軍役의 의무는 그 이행이 전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여전히 개별 촌의 계연수치를 근거로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였다.

토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촌에 남아 있는 농민에게도 정전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수취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항쟁하지 않으면 않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성여왕 3년(889)에 정부가 貢賦를 독촉하니 도적이벌떼와 같이 있어났다고 하는 이른바 농민항쟁은 바로 그러한 상황의 도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신라말 수취체계의 구조적 모순은 신라정부에 의해 해소되지 못하고 고려정부에 의하여 개선되었고, 농민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李仁哲〉

4. 천민의 생활

향・부곡

종래에 신라 통일기의 천민으로 鄉·部曲의 주민과 奴婢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1) 그러나 최근에는 향·부곡민을 양인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 해지고 있다.2) 먼저 부곡천민설은 중국과 일본의 부곡이 천민이었다는 사실

¹⁾ 白南雲,《朝鮮社會經濟史》(改造社,1933; 윤한택 역, 이성과 현실, 1989). 旗田巍,〈高麗時代の賤民制度「部曲」について〉(《和田博士還曆記念 東洋史論叢》, 1951;《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法政大學出版局, 1972). 립건상、《조선의 부곡제에 관한 연구》(과학출판사, 1963; 백산자료원, 1997).

을 전제로 한국의 부곡집단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이 천민설은 사적 유물론을 전제로 고대 노예제의 한국적 지표로 부곡집단을 설정하였다. 부곡 천민설은 본래 동일한 부족단체가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우세한 부족과 종 속적 부족으로 분열됨과 함께 전투행위 및 생산능력의 진전에 따라 하나의 부족이 다른 부족을 지배하는 관계가 발생하여 특수 부족집단으로서 부곡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특수부락민은 본래 집단적 노예였는데, 역사시대 이 래로 사회진전과 함께 농업노예가 되었다고 한다.3) 또 다른 천민설은 소국 간의 투쟁으로 광범한 예속민집단이 발생하여 부곡이 되었다고 보고, 이 부 곡이 6세기경 국가권력이 지방으로 침투 확대되면서 군현제의 일환인 천민 적 특수촌락으로 법제화되었다고 하였다.4)

부곡양인설에 따르면, 향과 부곡은 동일한 성격의 집단으로서, 신라시대의 항은 州·小京·郡·縣과 동질의 행정구획으로 군현에 비해 소규모적인 행정구획이었다.5) 향에는 지방관으로 鄉令이 파견되었으며 재지세력으로서 鄕村主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 鄕內의 행정을 수행하는 기구로 鄕司가 구성되어 있었다. 향의 주민도 중앙의 관등이나 관직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천민이나 부자유민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6)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향과 부곡의 주민이 양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진다면, 신라 통일기의 천민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부곡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상세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²⁾ 李佑成、〈高麗末期 羅州牧 居平部曲에 대하여〉(《震檀學報》29・30합집, 1966). 金龍德、〈部曲의 規模 및 部曲人의 身分에 대하여〉(《歴史學報》88, 1980;《韓國制度史研究》,一潮閣, 1983).

木村誠、〈新羅時代の鄕〉(《歷史評論》403, 1983).

朴宗基、〈新羅時代 郷・部曲의 性格에 關한 試論〉(《韓國學論叢》10, 國民大, 1988).

³⁾ 백남운, 앞의 책, 294~297쪽.

⁴⁾ 립건상, 앞의 책, 160~166쪽.

⁵⁾ 金龍德, 앞의 글, 9~12쪽.

⁶⁾ 木村誠, 앞의 글, 93~108쪽.

朴宗基, 앞의 글, 50~63쪽.

李仁哲,《新羅村落社會史研究》(一志社, 1996), 97~106쪽.

2) 노 비

신라장적에는 4개 촌의 전체 인구 462인 가운데 노비가 25명이 기록되어 있다. 25명이라는 노비의 숫자는 437명의 양인 숫자에 비하면 5.4%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唐代에 총인구 5천 만에 대한 노비 2백 만이 차지하는 비율인 4%보다?) 1.4%나 높은 비율이다. 이처럼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西原京부근의 촌에도 노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당시에 노비가 전국적으로 고루분포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8)

신라장적에는 양인을 남녀 · 연령별로 나누어 큰 글자로 기록해 놓고, 노비의 수는 양인의 성별과 연령에 맞추어 작은 글자로 기록해 놓았다. 이는 신라장적을 작성한 국가권력이 노비를 양인과 차별대우하였고, 장적의 작성 근거가 된 신라의 율령에서도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노비는 그 귀속대상에 따라 公奴婢와 私奴婢로 나누어진다. 공노비는 왕실이나 관아에 소속된 노비를 말하며, 사노비는 개인이나 사원이 소유한 노비를 말한다. 사노비를 다시 率居奴婢와 外居奴婢로 나누기도 하고, 納貢奴婢와 使喚奴婢로 구분하기도 한다.

노비는 발생유형에 따라 포로노비·형벌노비·부채노비·매매노비 그리고 출생에 의한 세습노비로 구분된다.9 삼국통일을 계기로 포로노비의 공급이 중단된 반면에 부채노비가 노비발생의 중심적 요인으로 등장하였다.10

전쟁포로노비는 진흥왕 23년(562)에 사다함에게 포로로 잡은 200명을 상으로 주었다는 기록을 통하여 그 존재를 유추해볼 수 있다. 형벌노비는 문무왕 13년(673)에 아찬 大吐가 모반하여 唐에 붙으려다가 탄로되어 그 자신은 사형을 당하고 그 자식은 賤에 편입되었다는 기록을 통하여 그 존재가 확인된다. 부채노비의 경우는《新唐書》新羅傳에 곡식을 꾸고 갚지 못하면 노비로

⁷⁾ 尾形勇, 〈良賤制の展開とその性格〉(《岩波講座 世界歴史》5, 1970), 332等.

⁸⁾ 旗田巍、〈新羅の村落〉(《歷史學研究》226・227, 1958~1959; 앞의 책, 445쪽).

⁹⁾ 盧泰敦, 〈統一期 貴族의 經濟基盤〉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1976), 135쪽.

¹⁰⁾ 高慶錫, 〈三國 및 統一新羅期의 奴婢에 대한 고찰〉(《韓國史論》28, 서울大, 1992, 39~56쪽).

삼는다고 한 기록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매매노비는 눌지왕 4년(420)과 진평왕 50년(628)에 백성이 굶주리다 못해 자식을 파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역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孝女 知恩傳에도 보면 지은은 자기 몸을 스스로 婢로 팔아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고 한다. 국왕이 관노비를 하사하여 사노비로 된 경우는 문무왕 2년(662)에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하사한 노비를 들 수 있겠다.11) 출생에 의해 노비로 된 경우는 A 촌의 문서에 보이는 三年間中小女子 가운데 포함된 비 1명을 들 수 있다. 신라장적은 율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장적에 출생노비가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노비의 신분세습이 율령에 규정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노비는 牛馬나 기타 재물과 같이 매매·증여·교환·재산분할의 대상이었다. 효녀 지은이 32세에 婢子가 되어 쌀 10여 석을 받았다는 기록으로 보면,12) 노비의 가격이 쌀 10여 석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같은 丁婢라하더라도 얼굴이 예쁘거나 일을 잘하는 경우는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보다 싼 가격에 매매되었을 것이다. 또 丁奴나 追子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노비도 이보다 싼 가격에 매매되었을 터이다.

노비와 양인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노비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에서 주인이 자신의 私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삼국사기》 丕寧子傳에 전해진다. 이를 보면 진덕왕 원년(647)에 김유신의 독려를 받고 비녕자가 新羅軍의 사기진작을 위해 적진으로 돌격해들어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비령자의 아들 擧眞도 적진을 향해 돌격해 들어가려 하자, 그의 私奴인 合節이 말고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에 거진이 합절의 팔을 끊고 적진중으로 달려가 싸우다 죽었다고 한다. 여기서 아무리 전쟁중이라 하더라도 주인이 사노의 팔을 베었다는 사실은 평소에도주인에게는 자신의 사노에게 상해를 입혀도 범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訥催傳에서 사람들이 눌최에게 '종이 재주가 있으면 害가 되니 멀리 하라' 고 한 말을 통해서 보면, 평소에는 國法이 엄격히 적용되므로 노비가 주인의 말을 잘듣고 구타를 당하면서도 복종하지만 전쟁터에서와 같이 生死가 혼란

^{11) 《}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2년.

^{12) 《}三國史記》 권 48, 列傳 8, 孝女知恩.

스러운 지경에서는 노비가 주인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신라에서도 주인이 노비를 가해한 경우는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나 노비가 주인을 가해한 경우는 엄격히 처벌하였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이에 합절은 자신의 팔을 끊은 주인을 가리켜 私天이라 하면서, '사천이 무너졌는데 죽지 않고 무엇하리요'라는 말을 남기고 적진으로 들어가 싸우다 전사하였다.¹³⁾

신라장적에 보이는 노비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인간으로서 권리나 의무를 갖지 못한 존재였다. 이들 노비는 대부분 私奴婢였다. 노비는 조·용·조의부담을 지지 않았다. 또 노비는 토지나 가옥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다. 이는 신라장적에서 丁奴를 제외시키면, 호등별 토지결수와 丁數를 어느정도 일정한 비율로 일치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14) 따라서 노비를 포함시켜서 신라의 9등호제가 설정된 것으로 볼 경우에는 土地와 人丁數의비례관계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처럼 호등별 인정수에 노비를 포함시키게되면, 토지와 인정수의 비례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은 노비가 給田의대상도 토지소유의 주체도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양인이 재산의 소유권이나 토지 경작권을 가진 권리 주체임과 동시에 조·용·조나 軍役의 의무를 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노비는 권리의 주체도 아니고 의무의 주체나 객체도 아니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奴들이 주인과함께 전쟁에 나아간 기록이 보이지만, 이들 노에게 군역의 의무가 부과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노비는 군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출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사유물로서 출전하였다. 그래서 公民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없었던 노비는 賣買・質入・分割 등의 처분 대상이 되었다. 노비에게 의무가 주어졌다면, 율령국가의 신분구조인 良賤制를 받아들이고 인간사회의 기본질서를 존중하면서 말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의무만이 주어졌다.15)

신라장적에 보이는 노비는 사노비로서 사역되었다. 노비의 대부분은 丁年層이고, 노년층이 전혀 없으며 아이의 숫자도 아주 적다. 이에 대해서 노비

^{13) 《}三國史記》 권 47, 列傳 7, 丕寧子.

¹⁴⁾ 李仁哲,〈新羅統一期의 村落支配의 計烟〉(《韓國史研究》54, 1986;《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244~246等).

¹⁵⁾ 李仁哲, 앞의 책(1993),173~174쪽.

는 부부와 자식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며 노비가 절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16) 반면에 비록 어려움이 있었다고하더라도 노비도 어느 정도의 가족생활은 하였으며, 노비는 증가추세에 있고, 평민 사이에도 상당한 계층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17)

《삼국사기》孝女 知恩傳에서는 효녀 지은이 부자집의 婢子가 되어 그 집에서 종일토록 일을 하고 날이 저물어야 밥을 지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고 전한다. 18) 이를 통해서 노비도 어느 정도의 가족생활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가족생활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노비는 부부와 자식이 함께 동거하면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경우는 아주 드물었다고 생각된다.

노비가 부부와 자식이 동거하는 형태의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장적에는 어린 노비가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출생에의한 노비가 존재하는 한, 노비의 정상적인 가족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출생에 의한 노비공급원 이외에 노비공급을 가능하게 한 현상으로 촌락사회의 계층분화를 들 수 있다. 촌락사회 내부에서 계층분화가 일어나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면서, 일부 富農에게는 노비를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를 마련해주었지만, 극빈층의 농민에게는 노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에 효녀 지은처럼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비가되거나, 자식을 노비로 팔아먹는 경우가 있었다. 촌락사회 내부의 계층분화가 또다른 노비공급원이 되었던 것이다. 19) 이렇게 공급된 노비는 귀족의 경제기반이 되었다. 20) 하지만 노비는 신라 하대의 왕위쟁탈전에서 귀족의 사병으로 활동하여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李仁哲〉

¹⁶⁾ 旗田巍, 앞의 책, 445쪽.

¹⁷⁾ 金鍾璿,〈正倉院 所藏 新羅帳籍에 나타난 奴婢〉(《歷史學報》123, 1989), 60~82等.

¹⁸⁾ 지은은 일종의 使喚奴婢였다고 생각된다.

¹⁹⁾ 李仁哲, 앞의 책(1996), 190~191쪽.

²⁰⁾ 盧泰敦, 앞의 글, 134~142쪽.

5. 의식주 생활

1) 의생활

통일신라시대의 의생활은 1986년에 경주 龍江洞 고분에서 출토된 土俑들과 興德王대 服飾禁制¹⁾의 기록 그리고 중국의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은 文武王 4년(664) 여인의 옷을 중국의 것과 같이 고친²⁾이후로 예복은 唐制를 많이 따랐고, 평상복도 차츰 당의 것을 따르게 되었다. 그 당시 삼국시대의 고유복을 착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물론 옛 복식을 계속 입었던 계층도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태평성세를 누리며 문화가 성숙하였지만 도덕이해이해지고 복식제도 역시 상하존비의 구별이 없이 사치에 흐르고 예의에 벗어나는 등 문란해지자 흥덕왕 9년(834)에 골품제도의 신분계급을 유지하고 사치를 금하기 위하여 복식에 대한 禁令을 내리게 되었다. 이 복식금제에는 약 22종의 복식에 대한 금제와 착용규정이 다섯 階級을 남녀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다. 즉 여기에는 冠帽(幞頭와 冠)・袍(表衣)・바지(袴)・저고리(短衣와 內衣)・치마(裳:表裳과 內裳)・半臂・褙襠・목도리(裱)・허리띠(腰帶)・허리끈(褛)・옷끈(襻)・버선(襪)・버선목(襪袎)・신발(靴・履)・신발띠(靴帶)는물론 빗(梳)・비녀(釵)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따라서 어떠한 재료로 만든 것들을 착용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시대의 기본적인 복식은 삼국시대 복식과 같았으며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반비·배당·표·요·반 등으로 삼국시대의 기본적인 의복 위에 옷을 덧입었던 것으로 보여, 삼국시대의 착장 모습과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은 모두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린 당나라 여인들의 차림새와 같은데 3종류로 구별된다. 소매 좁은 저고리 위에 치마를

^{1) 《}三國史記》 권 33, 志 2, 色服.

²⁾ 위와 같음.

입은 모습,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표(裱: 쇼올 형식의 목도리)를 두른 모습, 소매 넓은 저고리 위에 치마를 입고 표를 두른 모습이 그것이다.3) 이것은 중 국문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으며, 여자의 예복인 활옷(華衣)・圓衫・唐衣 역 시 이 무렵에 수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1) 머리장식

가. 남 자

머리장식은 頭飾과 冠帽로 나눌 수 있다. 남자의 머리 형태는 小人은 묶은 머리이고 大人은 상투머리형이었다.

남자의 대표적 관모로는 幞頭와 弁이 있으나 禁制에는 복두에 대한 것만나와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복두 외에도 다른 여러 종류의 관모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복두에 대해서는 그 만든 직물에 관한 금제가 있는데, 진골대등은 어떤 직물로 만든 복두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고, 6두품은 纏羅4·絁·絹5)·布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5두품은 羅6)와 시·견·포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4두품은 紗7)·시·견·포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평인은 견8)·포로 만든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복두의 모양은 唐制를 습용했을 당시에는 《宋史》 與服志에 나오는 紗·羅등의 직물로 만들어 下垂帶를 한 것과 같았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高麗圖經》에 貴人의 복두는 兩帶이고 庶民은 四帶여서 서민은 양대복두를 보면 피한다고9) 하였으므로, 고려시대 귀인은 이 兩脚이 옆으로 下垂한 복두를 착용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

³⁾ 김미자,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서울여자대학논문집》17, 1988), 96~97쪽.

⁴⁾ 매우 얇게 짠 고급 무늬비단. 참고로 색복지에 나오는 신라 직물을 귀중도

참고로 색복지에 나오는 신라 직물을 귀중도에 따라서 그 대강을 열거하면 布 - 綿紬-絹-絁-紗-綾(中小文綾·小文綾)-羅(昇天羅·越羅·纏羅·野草羅· 布紡羅·繡羅)-錦(繡錦)-罽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⁵⁾ 굵은 실로 성기게 짠 비단.

⁶⁾ 매우 얇은 비단.

⁷⁾ 엷은 透織으로서 지극히 곱고 가벼운 비단.

⁸⁾ 매우 얇고 성기게 무늬없이 짠 비단.

^{9) 《}高麗圖經》 권 19, 農商.

었던 복두는 처음에는 뒤로 대를 내렸을 뿐, 옆으로 뻗치는 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발전하여 고려시대·조선시대에까지 전승되었을 것이다.

나. 여 자

신라시대 여자의 두식이「美髮繚頭」였던 것이《新唐書》10)에 보이지만, 그모양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려도경》에는 미혼 여자의두식은「束髮」이라 했고, 부인의 醬는 귀한 신분이든 천한 신분이든간에 모두 머리를 오른쪽 어깨에 내려뜨리고 남은 머리는 아래로 내리되 붉은 색비단으로 묶고 작은 비녀(小簪)로 꽂는다11)고 하였다. 이것은 한말까지 있던소위「사양머리」12)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여자의 冠에 대해서 복식금제에는 왕비에서 6두품까지만 규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6두품 이상만이 관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5두품 이하는 관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여자의 관도 남자의 관모와 마찬가지로 재료에 대한 규제만 규정되어 있는데, 진골여는 瑟瑟¹³⁾을 박은 관의 사용을 금하며, 6두품여의 관에는 세라와 紗・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머리빗(梳)은 진골여·6두품여에게는 슬슬을 박아 장식한 것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5두품여는 玳瑁¹⁴⁾ 이하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4두품여는 흰 상아·뿔·나무 등으로 만든 것을 쓸 수 있었고, 평인여는 흰 상아와 뿔 이하로 만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머리빗은 唐에서는 兩鬢 후두부 등에 꽂고, 그 재료는 나무 외에 犀·옥·수정·상아 등이 있었고 한다.¹⁵⁾ 이로 보아 통일신라에서도 이를 후두부에 꽂았다고 볼 수 있다.

^{10)《}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아름다운 머리를 땋아서 머리에 두르고 구슬과 채색으로 장식하였다고 함.

^{11) 《}高麗圖經》 권 20, 女子・賤使.

¹²⁾ 김용숙, 《한국여속사》(민음사, 1989), 228쪽 참고. 사양머리는 一名 絲陽뿔라고 한다. 머리를 뒤에서 두 가닥으로 나누어 땋아 가 지고 이것을 밑에서 각각 2개로 말아 올라가서 뒤통수 밑에 나란히 세워서 묶 으면 마치 2개의 갸름한 쪽을 찐 것 같다.

¹³⁾ 타시켄트에서 생산되는 碧石으로 에메랄드(Emerald)로 추정된다.

¹⁴⁾ 보르네오·필리핀·쟈바 등 열대지방의 바다거북으로서 그 등껍데기는 각종 장 식용품의 재료로 쓰였다.

¹⁵⁾ 原田淑人, 《唐代の服飾》(東京: 東洋文庫, 1970), 85쪽.

비녀(釵)는 진골여는 그림을 새겨 넣거나 구슬 단 것을 금하며, 6두품여는 순금에 은으로 새겨 넣거나 구슬 단 것의 사용을 금하며, 5두품여는 白銀 이하로 만든 것을 쓸 수 있게 하였으며, 4두품여는 그림을 새겨 넣거나 구슬을 단 것과 순금으로 만든 것을 금하며, 평인여는 황동 이하로 만든 것을 사용하게 하였다. 무령왕릉 출토품 가운데도 이 차가 몇 개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전대부터 그대로 계속 써 온 것으로 보인다.

차는 玉編에 '婦人岐笄'라 하여 두 가닥으로 된 비녀를 말한다. 이것은 당제인 듯하며, 당에서는 '金銀釵十二行'이란 시구에서와 같이 많은 차를 한꺼번에 꽂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 재료도 금·은·주·옥·산호·호박·수정·유리 등이 있었고, 그 수식에도 鳳·鸞·원앙·燕雀·앵무·蟬・蝶・魚 등이 있었다 한다.16)

(2) 의 복

가. 포

겉옷을 의미하는 表衣는 중국제인 袍를 가리키는 것 같다. 오늘날의 두루마기로 변천해온 포는 고려시대의 白紵袍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의 관복을 모방한 團領과는 다르다. 4색 공복제도를 채용하여 진덕왕 3년에 '처음으로 中國의 衣冠을 입기 시작하였다'17)고 하였으므로 당시 관복의 포는 唐制를 따라 제도화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관복과 편복이 구별되어 입어왔듯이 당시 포의 경우도 관복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중국의 것으로 입었겠지만, 便服으로 입었던 것은 기록에 보이는 표의와 우리 고유의 포가 같이 입혀졌다고 생각된다.

복식금제의 표의에 대한 규제조항을 보면 남자의 경우 진골대등은 罽・繡錦羅¹⁸⁾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며, 6두품은 綿紬・紬・布로 만든 것을 입고, 5두품은 다만 포로 만든 것을 입고, 4두품은 면주로 만든 것을 입고, 평

¹⁶⁾ 原田淑人, 위의 책, 86쪽.

^{17) 《}三國史記》 권 5, 新羅本紀 5, 진덕왕 3년.

¹⁸⁾ 신라의 옷감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던 직물이다. 양털로 또는 명주실을 섞어서 짠 모직물인 罽와 각종의 彩絲로 섞어 짠 가장 정교하고 화련한 비단인 錦이나 얇은 무늬가 있고 질좋은 얇은 비단인 羅에 수놓은 직물을 말한다.

인은 다만 포로 만든 것만을 입을 수 있게 하였다. 여자의 경우를 보면 진골여는 劂・繡錦羅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며, 6두품여는 中小文綾¹⁹⁾・絁・絹으로 만든 것을 착용할 수 있었으며, 5두품여는 無文獨織²⁰⁾으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평인여는 면주·포로 만든 것만을 입을 수 있었다.

이로 보아 겉옷을 가리키는 표의는 진골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용하였으며 다만 어떤 재질로 만든 것을 착용하는가에 차이가 있었다. 또여기에는 骨品階級과 平人이 그 형태에 차이가 있어 전자는 중국 袍制의 영향을 받아 소매가 넓은 형(闊袖)이었고, 후자는 우리 고유의 포제 그대로 소매가 좁은 형이었다고 생각된다.

나. 바 지

바지(袴)를 신라에서는 柯半이라고 하였다. 복식금제에서는 남자의 바지뿐만 아니라 여자의 바지에 대한 규제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통일신라시대에도 여자가 바지를 입는 풍습은 여전하였다고 보여진다. 즉 평상시에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바지를 입고, 치마는 儀禮用으로 그 위에 덧입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바지는 삼국시대에 이미 통이 넓은 바지(大口袴)로 변해가는 양상이 보이므로 통 넓은 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平人層의 바지는 역시통이 좁은 바지(窮袴)가 계속해서 입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복식금제에서 보면 진골대등은 계·수금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며, 6 두품은 絁·絹·綿紬·布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5두품은 면주·포 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고, 4두품과 평인은 포로 만든 것만을 입을 수 있 었다. 진골여는 계·수라로 만든 것을 금하며, 6두품여는 계·수금라·시· 라로 만든 것과 金箔한 것을 금하며, 5두품여는 계·수금라·세라와 野草 羅21)와 금박한 것을 금하며, 4두품여는 소문릉·시·견 이하로 만든 것을 입

¹⁹⁾ 능은 천의 짜인 결이 얼음결이나 거울면처럼 곱고 빛나며, 풀·꽃 등의 무늬를 넣어 짠 비단이다. 中小文綾은 약간 작은 무늬를 넣어 짠 능을 말한다.

²⁰⁾ 한 가지 실로 무늬없게 짠 비단.

²¹⁾ 들풀의 무늬를 넣은 羅.

을 수 있었으며, 평인여는 시 이하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다.

다. 저고리(단의와 내의)

통일신라시대의 저고리에 대한 기록에 穩가 없는 것을 보면, 短衣가 저고리였다고 생각된다. 단의는 복식금제에 보면 內衣보다 옷감이 고급이므로 겉옷의 일종으로서 表衣 즉 포보다 짧아 단의라고 불렀으나 현재의 저고리와같은 형태는 아닌 것 같다.22) 단의는 옆터진 저고리로 조선시대의 唐衣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통일신라시대의 저고리는 단의라고 보여지며, 이를 尉解라고도 하였다. 복식금제의 단의 항목에는 6두품여는 罽・錦羅・布紡羅23)・野草羅와금은박 올리는 것을 금하고, 5두품여는 계・금라・포방라・야초라와 금은박올리는 것과 纖纈24)로 염색한 것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고, 4두품여는 견으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6두품・5두품・4두품의 여자에 대한 금제가 보일 뿐 남자에 대한 것은 볼 수 없으므로 이 단의는 남자의 옷은 아닌 것 같다.

내의는 표의 속에 입는 옷 혹은 半臂이나 褙檔 속에 입는 옷으로 남녀 진골부터 평인까지 모두 금제항목이 있다. 속저고리 형태로 삼국시대 저 고리와 모양은 같으나 異色撰 대신 길과 같은 옷감이 둘려져 있으며, 소 매는 매우 길어져 무용총 벽화에 등장하는 무용수의 저고리 소매와 같아 진 것이 있다. 금제에 나타난 재질로 보아 속에 입는 옷에까지 비단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두품과 5두품은 소문룡・시・견・포로 만 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4두품은 시・견・면주・포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고, 평인은 견・포로 만든 것만을 입을 수 있었다. 진골여는 계・수

究》,乙酉文化社,1948,29쪽 및 李京子,《韓國服飾史論》,一志社,1982,31쪽).

²²⁾ 金東旭、〈新羅統一期의 服飾〉(《韓國의 服飾》)、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73쪽. 柳喜卿、《韓國服飾史研究》(梨花女大出版部, 1986), 19쪽. 한편 內衣가 저고리라는 설도 있다(洪姝瓊・洪茂瓊、《韓國衣服 婚姻制度의 研

²³⁾ 여러 빛깔의 실을 교대로 층이 지게 짜서 만든 화려한 색동 비단인 것 같다.

²⁴⁾ 문양을 새긴 두 조각의 판 사이에 직물을 삽입하여 염색하는 방법으로 주로 삼 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유행하였던 고급 염색방법이다.

라로 만든 것을 입는 것은 금하였으며, 6두품여는 계·수금과 야초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며, 5두품여는 소문능을 사용하여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고, 4두품여는 소문능 이하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평인여 는 시·견·면주·포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다.

라. 치마, 허리끈과 옷끈

우리 나라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는데, 삼국시대에는 치마(婁: 表裳과 內裳)가 있어 여자는 바지 위에 치마를 덧입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내상을 껴입었다는 사실은 이 복식금제에 처음으로 나온다.

통일신라시대의 치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땅에 끌릴 정도였으며, 또 허리에 주름이 있었고, 치 마단에는 일종의 裝飾緣 즉 撰을 붙인 삼국시대의 치마 그대로였다고 본다.

표상은 겉에 입는 치마로 치마말기가 있으며 옆으로 여며 입었을 것이다. 내상은 치마 2개를 입었을 때 속에 입었기 때문에 내상이라 했던 것으로 보 인다. 이 같이 내상이 생겨났다는 것은 단의에 있어서 내의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식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중국복식이 들어오면서 남자에 있어서도 貴族 ·官吏·讀書階級에서는 치마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복식에서 온 것으로 上衣下裳式의 상의와 하상이 연결된 것으로서의 상이었으며 이를 대표 하는 것이 深衣였다. 이렇게 남자의 치마는 일반화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복식 금제에 있어 표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상도 남자의 것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被는《大漢和辭典》에 허리띠 혹은 허리끈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치마허리 (치마말기)라고 볼 수 있다.²⁵⁾ 襻은《集韻》에 衣系曰襻이라고 하여 일종의 옷 고름으로 보인다.²⁶⁾ 통일신라 남자 옷에도 衣紐(옷고름)가 있었는데《삼국사기》에 '庾信이 春秋公과 공을 차다가 춘추의 紐를 밟아 떨어뜨렸다'²⁷⁾란 기

²⁵⁾ 洪姝瓊·洪茂瓊, 앞의 책, 33쪽. 김미자, 앞의 책, 98쪽.

²⁶⁾ 金東旭, 앞의 책, 76쪽

^{27) 《}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복식금제에 보면 6두품여의 내상은 계·수금라·야초라로 만든 것으로 입는 것을 금하고 표상에는 계·수금라·세라·야초라로 만든 것과 금은박 올린 것과 협할한 것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였다. 5두품여의 표상은 6두품여와 같고, 내상은 계·수금라·야초라와 금은박 올린 것과 협할한 것으로만들어 입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허리끈과 옷끈은 6두품·5두품 모두 계·수금라만을 금했으므로 허리끈과 옷끈은 치마감보다 고급 옷감을 사용할수 있었다. 4두품여의 표상은 시견 이하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으며 허리끈은 치마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옷끈은 越羅28)를 사용하도록 했다. 4두품여에게는 내상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4두품 이하의 여자들은 내상을입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중국여인들의 치마는 치마폭과 치마말기의 옷감이 같은 것도 있었으나 다른 것도 많았다. 통일신라의 치마도 마찬가지로 복식금제에 6두품여와 5두품여의 표상과 내상의 옷감과 치마끈과 옷끈의 옷감이 달랐다. 지금은 치마허리와 옷고름 등 옷끈은 치마와 다른 감을 사용하여 만들 경우 대체로 치마옷감보다는 좋지 않은 옷감을 사용하는데 통일신라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서로 다른 감을 사용할 경우 치마보다 치마허리와 치마끈을 더 좋은 옷감으로만들었다. 남자 복식에는 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옷과 옷끈에다른 감을 쓰는 것은 여자의 것뿐이었다고 생각된다.

마. 반 비

半臂(褙)는 내의 위에 입는 상의이고 엉덩이 정도 내려오는 길이의 소매가 짧은 옷으로 남녀 모두 입었다.

반비에 대하여 李粹光은 "당의 고조가 소매를 짧게 한 옷을 만들어 반비라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背子이다"²⁹⁾라고 하였다. 이 반비는 唐에서 비롯한 것으로 통일신라 이전에는 우리 나라에 없었던 것이다.

²⁸⁾ 부들자리 무늬가 있는 얇은 비단.

²⁹⁾ 李睟光,《芝峰類說》 권 19, 服用部.

반비는 男服의 경우《文獻備考》에 "오늘날 戰服은 옛날의 반비인데 일명 綽子 또는 褡胡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文官답호라 불리었고 전복이 되기도 하였다. 女服에 있어서는 宋文欽의《閒靜堂集》에 "소위 長背 子는 長袖이고 兩裾가 서로 덮이고 兩腋을 꿰매지 않은 것으로 요즈음 남자 들의 긴 저고리와 비슷한 것이다. 조금 짧으면 短背子가 되니 즉 지금의 唐 衣이다. 반비라 하는 것은 지금의 掛子와 비슷하다. 단 쾌자의 양거가 수직 한 것과는 다르다. 그 반비의 짧은 것은 지금의 背子다."30)라고 하여 반비가 조선시대의 쾌자나 배자와 비슷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반비는 복식금제에서 보면 평인 남녀에게는 그 규제가 없으므로 이것은 골품계급에서만 허용된 것이었다. 진골대등은 계·수금라로 만든 것을 입지 못하게 금하였으며, 5두품은 소문능·시견으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으며, 4두품은 시견 이하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다. 진골여는 계·수금라로만들어 놓은 것은 입지 못하게 금하였으며, 6두품여는 계·수세라로 만든 것을 합 착용할 수 없었으며, 5두품여는 계·수금·야초라·세라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없었으며, 4두품여는 소문능·시견 이하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었다.

바. 배 당

稍檔도 배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반비와는 달리 소매가 없는 옷으로 치마 위에 입는 겉옷이라고 생각한다.

복식금제에는 단의와 같은 옷감으로 내의보다 고급 옷감이 쓰였다. 이것은 6두품여·5두품여·4두품여에게만 그 규제가 있어서 여인 전용의 것으로 보여진다. 진골여에게는 재질에 제한이 없으나 6두품여는 계·금라·포방라·야초라와 금은박 올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입지 못하게 금하였고, 5두품여는 계·금라·포방라·야초라와 금은박 올리는 것과 협힐로 염색한 옷감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였고, 4두품여는 능으로 만든 것을 입을 수 있게 하였다. 평인여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반비와 마찬가지로 평인여에게는 배당의 착용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³⁰⁾ 宋文欽,《閒靜堂集》 권 7, 雜著.

사. 표

裱는 唐制에서 나온 領布로 목 뒤에서 가슴 앞으로 길게 드리우는 일종의 「목수건」으로서 통일신라에서의 표도 그것과 같은 것이었고, 고대 일본 여인들의 「比禮(히레)」 또는 「淤須比(오스비)」와 비슷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고려시대의 蒙首, 조선시대의 蓋頭와는 다른 계통의 여인들이 사용한 「쓰개」의일종이었다.

복식금제에서 보면 표는 진골여에서 4두품여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진골여는 계와 수놓은 것과 金銀絲와 孔雀尾와 翡翠毛로 만든 것의 사용을 금하였고, 6두품여는 계·수금라와 금은박 올린 것으로 만든 것의 사용을 금하였다. 5두품여는 능으로 만든 것, 4두품여는 견으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아. 요 대

腰帶는 허리띠로 치마말기 위로 매어 앞으로 늘어뜨려 놓는 것인데 옷이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것과 장식 역할을 하였다. 여자의 것은 단지 帶로 표현하였으며, 《訓蒙字會》에는 대를 골홈이라고 했다.

복식금제에 보면 진골대등에게는 硏文白玉31)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였으며, 6두품은 鳥犀・鍮・鐵・銅으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5두품은 철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4두품・평인은 철과 구리로 만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진골여에게는 금제가 없고, 6두품여・5두품여는 金銀絲・孔雀尾・翡翠毛로 만든 술을 단 것의 사용을 금하고, 4두품여는 수놓은 것과 땋은 것과 야초라・乘天羅32)・월라로 만든 것의 사용을 금하고 면주로 만든 것만을 사용하게 하고, 평인여는 능・견으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있게 하였다.

남자의 요대는 금제에 검은 무소뿔·놋쇠·철·구리 등으로 만든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과대였을 것이고, 여기에 腰佩마저 연상케 하는 것이 있었다. 여자의 대는 野草羅·乘天羅·越羅로 만든 것이 보이므로 이것은 천

³¹⁾ 갈아서 무늬를 낸 백옥.

³²⁾ 乘天女의 문양이 있는 얇은 비단.

으로 만든 띠(布帛帶)로 생각되며 고급품으로는 金銀絲·孔雀尾·翡翠毛로 만든 술이 달린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골대등에게 옥을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였다는 것은 같은 진골 출신이되 왕에게는 옥의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당의 君王白玉帶를 연상케 한다. 또한 진골여에게 아무런 금제가 없다는 것은 백옥대를 하여도 좋다는 것으로 왕비의 요대에 있어 그 의복이나 여러 修飾에서와마찬가지로 그것이 화려했던가를 짐작케 한다.

자. 버선 · 버선목

통일신라시대 버선, 즉 襪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여기에 襪彻 즉 버선목이 있어 오늘날의 버선과는 다르게 말과 말요를 따로 만들어 붙인 것 같다. 그 옷감도 말과 말요가 달랐던 것은 복식금제에서 그 절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오늘날의 버선과는 달리 의복과 같은 비단류로 버선까지도 만들어 신고 있어 그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골대등은 능 이하를 마음대로 쓰며, 6두품은 시·면주·포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있었으며, 5두품은 다만 면주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진골여는 계·수라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없도록 금하였으며, 6두품여·5두품 여는 계·수금라·세라·야초라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없었고, 4두품여는 소 문능과 시·전·주·포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있었으며, 평인여는 시·면주 이하로 만든 버선만을 신을 수 있었다.

버선목은 6두품 이하 여자에게만 금제가 나타나는데 6두품여는 계·수금 라로 만든 것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5두품여는 계·금라·세라로 만든 것의 착용을 금하였으며, 4두품여는 다만 소문능 이하로 만든 것을 신도록 하였으 며, 평인여는 무늬없는 직물만 사용하여 만든 것을 신을 수 있게 하였다.

차. 화·화대·이

우리 나라 고대사회의 신에는 靴와 履가 있어 복식금제에도 화와 이를 구 별하여 놓았다. 화는 목이 있는 신발로 남자만이 신었고, 이는 목이 없는 신 발로 남녀 모두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에는 신발끈 즉 靴帶가 달려 있다.

진골대등은 자색 가죽신(紫皮靴)을 신는 것을 금하였으며, 6두품 이하 평인 까지는 검은 사슴의 주름무늬 자색 가죽으로 만든 것을 신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었다. 화대에 대해서 진골대등에게는 隱文白玉³³⁾의 장식을 금하였으며, 6두품은 검은 무소뿔과 놋이나 철과 구리를 사용하여 장식할 수 있었으며, 5두품은 놋쇠와 철과 구리로 장식할 수 있었고, 4두품과 평인은 철과 구리로 장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화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수당의 六合靴(六縫靴式)을 모방한 것이었다. 신라인은 복식의 華美를 특히 숭상하였으므로 귀금속 기타 玉·角類 등으로 그 화대까지를 이렇게 크게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라에서 洗라고 하였다. 복식금제에서 보면 진골대등은 가죽이나 실이나 麻 어느 것으로 만든 것이든지 마음대로 신을 수 있었으며, 6두품・5두품은 가죽과 삼으로 만든 것을 신을 수 있었고, 4두품은 가죽 이하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평인은 삼 이하의 재료로 만든 신만을 신을 수 있었다. 한편 진골여의 이에는 계・수라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6두품여의 것에는 계・수금라・세라의 사용을 금하였으며, 5두품여・4두품여의 것은 가죽이하의 재료로 만들도록 규제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죽으로 만들어 조선시대의 갓신이나 마른신과 거의 비슷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진골여와 6두품여 같은 귀족의 여인들은 모직이나 비단을 겉에 붙여 장식한 것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麻로 만든 것은 미투리·짚신 등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식생활

통일신라는 삼국이 각기 발전시켜온 특징있는 생활문화들을 계승하였다. 식생활문화도 한데 융합되어 식생활의 큰 진전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우 리나라 식생활의 기본체제가 정착되었다.

³³⁾ 은은한 무늬가 있는 백옥인 듯하다.

신라에서는 초기에 보리가 주로 생산되었지만 점차 벼농사가 확대되었다. 가야의 병합으로 김해일대의 평야를 장악한 신라는 이어 한강유역을 점유하고 백제를 복속시켜 서해안 평야의 벼농사 적지를 확보하였다. 삼국시대에이어 永川 菁堤가 중수되고34) 수리시설이 더욱 확대되었다.35) 그리고 보습・따비・가래・팽이・쇠스랑 등 대부분의 농기구가 이미 정비되었고36) 牛耕을 비롯한 농업기술도 크게 발전하였다. 국가정책적으로도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고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등의 배려가 있었다.37)

이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통일신라에서는 쌀을 비롯한 곡물의 생산이 안정되었다고 보여진다. 신라가 백제를 병합하였던 태종무열왕대에는 곡식이 풍부하여 시장에서 포 1필이 30석 혹은 50석에 거래되었고, 백성들이 盛代라 말하였다고 전해진다.38) 그리고 통일을 이룩하였던 문무왕대에는 커다란 창고에 쌀을 비축하였다고 한다.39) 이러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 쌀의 생산이 확대되었으나 자연지리적 조건이 벼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보리·조·콩 등 잡곡의 생산이 계속되었다.

곡물 이외에 채소와 과일·육류·수산물 등이 먹거리로 이용되었다. 채소류로는 상치·가지·아욱·순무 등이 삼국시대부터 이용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록에서 미나리(芹)와 오이(黃瓜)를 볼 수 있다. 崔致遠의 글에서 미나리가 등장하고,40) 통일신라 말기의 사람이었던 崔凝의 이야기에 오이가 보인다.41) 그리고 과일류로는 밤·잣·복숭아·오얏 등이 있었고42) 최치원은 앵두를 과일 중의 진주라 하였다.43) 불교가 전래된 이후 살생을 금지하였지만44) 상류층에서는 육류와 수산물을 즐겼다고 보여지며 섬에서 목

³⁴⁾ 李基白、〈永川 菁堤碑 貞元修治記의 考察〉(《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284~287等.

^{35) 《}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원성왕 6년 · 헌안왕 3년 4월.

³⁶⁾ 金光彦, 〈신라시대의 농기구〉(《신라사회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1987), 289쪽.

^{37) 《}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21년.

^{38)《}三國遺事》 권 1, 紀異 2, 太宗春秋公.

^{39)《}三國遺事》 권 2, 紀異 2, 文虎王法敏.

^{40)《}東文選》 권 47, 狀 人蔘三斤天麻一斤.

^{41) 《}高麗史》 권 92, 列傳 5 崔凝.

⁴²⁾ 李盛雨, 《동아시아속의 고대 한국식생활사연구》(향문사, 1992), 326~327쪽.

^{43)《}東文選》권 47, 狀 崔致遠의 謝櫻桃狀.

축을 하여 식용하였다는 기록도 있다.45)

통일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풍부한 곡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식생활을 영위하였다. 곡물은 주식으로 하고 그외의 먹거리는 부식으로 조리·가공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부식의 분리가 정착되었다고 여겨진다.

통일신라시대 식생활 용구의 모습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다. 이 유물들은 다른 부장용 유물과 달리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어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우선 토기는 완형 및 복원 가능한 것이 1,600여 점, 복원 불가능한 것이 약 1,000여 점 등 방대한 양이 출토되었다. 46) 그리고 기형의 대부분이 盌・皿・瓶・壺 등 사용하기 편리한 것들이었다. 이러한 토기는 그 용도에 따라 음식의 조리・저장・가공은 물론 식기로도 이용되었을 것이다. 중국사서에서는 신라에서 식기로 버드나무그릇・동제그릇・질그릇을 사용하였다고47) 하며, 《삼국사기》를 보면 금은그릇・도금그릇・유기・돌그릇・칠기 등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48) 그리고 안압지에서는 순가락과 젓가락도 발견되었는데, 숟가락은 이전 시기부터 출토되고 있어 숟가락을 이용하는 식생활문화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49)

도정에는 방아가 이용되었다. 百結先生의 이야기에 방아가 등장하고50) 고 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디딜방아도51) 계속해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리고 신라에서는 겨울에 부뚜막을 만들었다고 하며52) 안압지에서 오늘날의 풍로와 같은 화덕이 출토되었는데 여름철에는 이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했 던 것으로 여겨진다. 곡물의 조리에는 주로 솥이 이용되었다. 眞定師가 출가 하기 전 가난했던 그의 살림 중에 다리부러진 솥 하나가 유일한 것이었다고

^{44)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6년·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10년·권 27, 百濟本紀 5, 법왕 즉위년.

^{45) 《}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46)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78), 182~245쪽.

^{47)《}舊唐書》 권 199上, 列傳 149上, 東夷 新羅. 《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48)《}三國史記》 권 33, 志 2, 器用.

^{49) 《}안압지발굴조사보고서》, 391~395쪽.

^{50)《}三國史記》 권 48, 列傳 8, 百結先生.

⁵¹⁾ 崔茂藏・임연철, 《고구려벽화고분》(신서원, 1990) 119~124쪽.

^{52)《}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하는데 그의 어머니가 이 솥마저 시주하자 질그릇으로 솥을 대신해서 음식을 익혀 봉양하겠다고 하였다.⁵³⁾ 이러한 기록에서 이 시대에 솥이 보편적으로 이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곡물의 조리·가공기술이 발전하여 식생활에서 밥이 주식이 되었다. 쌀을 끓여 익혀 밥을 짓는 방법은 곡물조리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곡물을 가루내어 끓이는 죽에서 찌는 밥을 거쳐 짓는 밥으로 발달하였다.54) 이는 쌀생산의 확대와 조리기술의 발달, 솥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곡물을 이용한 음식도 다양해졌다. 眞表律師가 不思議房에 갈 때 쌀을 쪄서 말려 양식을 삼았는데55) 이는 미싯가루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최치원의 글에는 단술(甘醴)이 보이며,56) 金庾信이 전장에 가면서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마시고 갔던 漿水도 있었다.57) 떡은 이전 시기부터 중요한 곡물음식이었다. 백결선생의 대악은 떡치는 소리를 흉내낸 것이었고,58) 竹曼郞과 得鳥의 이야기에는 舌餅이 등장한다.59)

한편 이 시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다. 車得公이 安吉에게 차려낸 50여 가지의 음식은60) 그 풍부함을 보여주며, 신문왕이 왕비가 될 집안에 보내는 예물에서 장·메주(豉)·脯·醢 등 다양한 음식을 볼수 있다.61) 음식들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羹)이다. 최치원의 글을 보면 밥과 함께 국이 나오고 있다.62) 이 시대 말기에 등장한 국은 이후 우리 나라식생활에서 대표적인 부식이 되었다.63) 따라서 이 시대에는 밥을 주식으로하고 장·포·해 등의 상비 기본찬물로 구성되는 일상식의 기본양식이 갖추어지고64) 여기에 국이 더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53)《}三國遺事》 권 5, 孝善 9, 眞定師孝善雙美.

⁵⁴⁾ 李盛雨, 앞의 책, 380~383쪽.

^{55)《}三國遺事》 권 4, 義解 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56)《}東文選》 권 4, 五言古詩 寓興.

^{57) 《}三國史記》 권 41, 列傳 1, 金庾信 上.

^{58)《}三國史記》 권 48, 列傳 8, 百結先生.

^{59)《}三國遺事》 권 2, 紀異 2, 孝昭王代 竹旨郎.

^{60)《}三國遺事》 권 2, 紀異 2, 文虎王法敏.

^{61)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3년.

^{62)《}東文選》 권 57, 書 答浙西周司空書.

⁶³⁾ 姜仁嬉, 앞의 책, 165쪽.

기본 상비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장이었다. 調信의 꿈이야기 가운데 걸식하면서 추위가 더해져 곁방과 장얻기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65) 그리고 眞定師가 출가하면서 어머니에게 하는 말에도 장과 양식이 함께 나온다.66) 장의 원료인 콩은 우리 나라에서 일찍부터 재배되었고 널리 이용된 곡물 중의 하나였다. 장은 발효식품으로서 그 자체로 부식이 되었지만 음식의 조리와 가공에도 널리 이용되었다.

음식의 조리에는 각종 조미료가 이용되었다. 장은 기본적인 조미료였으며 신문왕의 예물에 들어 있는 꿀·기름도 조미료로 이용되었다. 이들 조미료를 써서 다양한 맛을 내는 음식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의 조리뿐 아니라 가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해와 같은 절임류의 음식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외에도 천초·생강·귤피 등도 조미료 로 이용되었다.⁶⁷⁾

어패류와 육류는 포 또는 해로 가공되었다. 신문왕의 예물에 보이는 포는 말린 것이며 해는 절인 것으로 비축성 상비음식이었다. 절인 음식에는 채소류의 절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아찌나 김치류였을 것이다. 우리 나라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김치는 이 시기부터 이용되어졌다고 여겨지며 이 때의 김치는 무우·가지 등의 채소류에 천초·생강 등을 향신료로 첨가하였다고 생각된다.(68) 말리거나 절여서 가공·저장하는 방식 이외에도 발효시켜 가공·저장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발효에 의한 가공법은 술을 빗거나 장을 만드는 데에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음식의 가공에 이용되었다. 또한 음식물의 저장에는 얼음도 이용되었다.69) 얼음은 결빙기에 채취하여 빙고에 저장하였다가 사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⁶⁴⁾ 尹瑞石, 〈신라의 음식〉(《신라사회의 신연구》), 198쪽.

^{65)《}三國遺事》 권 3, 塔像 4,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66)《}三國遺事》 권 5, 孝善 9, 眞定師孝善雙美.

⁶⁷⁾ 姜仁嬉, 앞의 책, 162쪽.

⁶⁸⁾ 尹瑞石, 앞의 글, 164~165쪽.

^{69)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지증왕 4년. 《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통일신라시대는 식생활문화의 발전이 있었지만 사회구조에 따른 식생활의 계층화 모습도 나타났다. 신라사회는 골품제 사회였다. 따라서 정치적 출세이외에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신분의 규제를 받았으며 식생활의 영역도 마찬가지였다. 《삼국사기》잡지의 기용조는 신분에 따른 기물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으며 4두품 이하 백성들은 금은그릇, 도금한 그릇은 물론 유기와 칠기의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70)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식생활 용구 외에도 주식으로 이용된 곡물, 부식으로 이용된 식품 등에서도 차별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眞鑑禪師의 비에는 그가 거친 음식과 채소 한 가지만을 먹고 살았다고 한다.71) 이는 물론 그의 고행과 덕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통해 당시사람들의 식생활에서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조세와 역역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전성기라 할 수 있는 중대에도 토지에서 이탈하는 유민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구휼기사는 이를 반증하고 있다.72)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당서》의 재상가의 기사를 보면73) 귀족들은 백성들의 생산물을 독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풍요한 생활을 하였다. 그모습은 숯으로만 밥을 지었다고 하는 헌강왕대의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할수 있다.74)

한편 이 시대에는 특별음식도 발달하였다. 정월 초하루, 정월 보름, 팔월 보름 등의 節日이 삼국시대부터 생겨나고 여기에 따르는 節食도 발달하였다. 물론 지금의 것과 차이는 있었겠지만 계절에 따른 절식의 발달은 음식을 다 양화시켰다. 그리고 술을 비롯한 제사음식도 발달하였다. 가락국의 제사에서 술·떡·밥·차·과실 등의 제물이 올려졌는데⁷⁵⁾ 여기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불교의 전래와 함께 차가 발달하였다. 이 시대에는 음다풍속에

^{70)《}三國史記》 권 33, 志 2, 器用.

^{71)〈}雙谿寺眞鑒禪師大空塔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72)《}三國遺事》 권 2, 紀異 2, 聖德王.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원성왕 2년.

^{73) 《}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74) 《}三國史記》 권 11, 新羅本紀 11, 헌강왕 6년.

^{75)《}三國遺事》 권 2, 紀異 2 駕洛國記.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忠談師는 경덕왕에게 차를 달여드렸고76) 경덕왕은 月明師에게 좋은 차를 내렸다.77) 차는 흥덕왕대에 당에 사신으로 다녀온 金大康이 차의 종자를 얻어와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78) 그리고 차에 곁들이는 과정류도 차와 함께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79)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간의 식생활에서의 교류도 확대되었을 것이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삼국의 문화를 수용하였고, 식생활문화도 신라의 수도인경주와 지방간에 교류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에서는 그 자연적 조건에 따라 톡특한 식생활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교류를통해 식생활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였다. 지방간의 식생활 교류에는 시장이 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통일 이전에 경주에 東市를 열었던 신라는효소왕대에 西市와 南市를 설치하였다.80) 이를 보면 시장을 통한 상업활동이왕성했다고 보여지며, 여기에는 식생활과 관련된 교류도 포함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지방도시였던 소경들은 지방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각 지방의특징있는 음식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식생활문화의 국제적인 교류도 있었을 것이다. 신라는 당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지대하였으며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벌였다. 유학자·승려들 가운데에는 당에서 수학하고 활동하였던 인물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당에 건너간 신라인들의 거주지인 신라방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과정에서 식생활문화의 교류가 생겨, 당의 식생활문화가 우리 나라에 전해졌으며 우리의 것이 당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본과의문화적 접촉도 있었다. 삼국은 일본에 커다란 문화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통일신라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여기에는 식생활의 요소도 포함되었을 것이며 교역을 통해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식생활의 국제적 교류는 음식문화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76)《}三國遺事》 권 2, 紀異 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77)《}三國遺事》 권 5, 感通 7, 月明師兜率歌.

^{78)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흥덕왕 3년.

⁷⁹⁾ 姜仁嬉, 앞의 책, 163~165쪽.

^{80) 《}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효소왕 4년.

이상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식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귀족들의 식생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체적인 식생활문화를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에 식생활문화가 전시기보다 더욱 발달하였음은 여러 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주식을 비롯한 먹거리의 생산이 확대되었고, 식생활 용구와 조리·가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져 일상식의 구조가 갖추어졌다고 보여진다. 다양한 음식들의 예를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음식·절식 등도 더욱 다양화되었을 것이다. 또한 불교와 같은 새로운 문화요소와 국제교류를 통한 다른 나라의 식생활문화도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삼국이발달시킨 특색있는 식생활문화는 지방에 따라 독특한 음식들을 발전시켰을 것이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식생활문화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3) 주생활

통일신라시대에는 고구려·백제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더욱 발전하여 문화·예술·정치·경제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주생활의 영역에서 보면 이전 시기의 주생활문화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 진적으로 발전하여갔다.

이 당시의 주생활문화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헌강왕 6년(880)에는 "왕이 신하들과 함께 月上樓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서울(慶州)의 민가(民屋)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노래와 풍악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왕이 侍中 敏恭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지금 민간에서는 집의지붕을 기와로 잇고 짚으로 잇지 않으며 밥을 숯으로 짓고 나무로 짓지 않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하니 민공이 대답하기를 '臣도 일찌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81)는 기록이 있다. 왕이 오른 월상루라는 건물을 궁궐중의 한 누각이나 궁궐 근처의 누각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왕이 본 주변의 민

^{81) 《}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헌강왕 6년 9월.

가는 궁궐의 옆에 붙어 있는 주택 즉, 상류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지배계층이었으며, 숯으로 밥을 짓고 여름에도 얼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계층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계층에서 제외되는 계층에서는 대부분이 짚(草)을 이용하여 초가를 짓고 장작으로 밥을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숯으로 밥을 짓는다는 기사를 뒷받침하는 풍로가 안압지에서 출토되었다. 《新唐書》에는 "… 冬則作竈堂中 夏以食氷上 …"이라 하여 겨울에는 당중에 부뚜막을 만든다는 기록82)이 있다. 이 기록에서 부뚜막을 겨울철에만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겨울철에는 부뚜막을 이용하여 취사와 난방을 겸했으리라생각된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이 부뚜막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압지출토의 풍로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취사를 했을 것이다.

이 풍로와 같은 형태의 것은 얼마 전까지 제주도에서 볼 수 있었는데, 「봉 덕화로」라 하여 난방의 기능을 겸하지 않는 옥외의 화로가 있었다. 또한 시골 에서 잔치 벌일 때 임시로 솥을 걸 수 있게 만든 간이식 부엌인 「한데부엌」 도 같은 원리의 것이다. 이러한 풍로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발전된 주거형식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신라시대의 집모양토기에 서 볼 수 있는 고상주거형식이나 당시의 건물에 전돌로 바닥을 깐 것에서 추 측해 볼 수 있다.

헌강왕대는 통일신라 하대이므로 이 시대의 기록은 신라의 문화가 가장 발전했던 시기의 수도, 경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유사》에서도 "제49대 헌강왕 시대에는 서울(경주)로부터 동해 어구에 이르기까지 집들이 총총히 들어섰지만 초가집 한 채를 볼 수 없었고 길거리에서는 음악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며 사철의 비바람마저 순조로웠다"⁸³⁾라고 기록하고 있어 신라 전성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주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신라의 전성시대의 서울 안 戶數가 17만 8천 9백 36호에 1천 3백 60 동리(坊)요 주위가 55리였다. 서울 안에 35개의 金入宅(부자집 큰 저택을 말한다)이 있었으니 南宅・北宅・亏比所宅・本彼宅・

^{82)《}新唐書》 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

^{83)《}三國遺事》 권2, 紀異2, 處容郞望海寺.

梁宅・池上宅(本彼部에 있다)・財買井宅(金庾信의 祖上宅)・北維宅・南維宅(反香寺 아래동리)・隊宅・賓支宅(世향사 북쪽)・長沙宅・上櫻宅・下櫻宅,・水望宅・泉宅・揚上宅(梁 남쪽)・漢岐宅(法流寺 남쪽)・鼻穴宅(법류사 남쪽)・板積宅(芬皇寺 윗동리)・別敎宅(개천 북쪽)・衙南宅・金楊宗宅(梁官寺 남쪽)・曲水宅(개천 북쪽)・柳也宅・寺下宅・沙梁宅・井上宅・里南宅(亏所宅)・思內曲宅・池宅・寺上宅(大宿宅)・林上宅(靑龍이라는 절 동쪽에 못이 있다)・橋南宅・巷叱宅(本彼部에 있다),樓上宅・里上宅・椧南宅・井下宅이다."84)라고 하였다. 이 금입택으로 불려지는 상류저택들이 서울에 들어섰다는 것은 왕권에 비례되는 막대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유력 진골층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85)

그리고 四節遊宅을 말하면서 "봄에는 東野宅이요 여름에는 谷良宅이요 가을은 仇知宅이요 겨울은 加伊宅이다. 제49대 헌강왕 때에는 성중에 초가집이란 하나도 없었으며 추녀가 맞붙고 담장이 연닿고 노래와 풍류소리가 길에가득 차서 밤낮 그치지 않았다"86)라고 기록하였는데, 이 사절유택은 귀족들이계절에 맞추어 놀러다니던 별장을 이야기한 것으로 당시의 귀족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대 가옥의 구체적인 모습은 신분에 따른 제한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삼국사기》 잡지의 屋舍조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87)

○ 진골의 방은 폭과 넓이가 24척을 넘지 못하며 唐瓦(중국 기와)를 덮지 않고, 飛詹(날아갈 듯이 높이 들린 처마)을 하지 않으며, 조각한 懸魚(고기 모양을 만들어 매다는 것)를 달지 않으며, 金銀・鍮・石과 五色으로 장식하지 않으며, 담장에는 보(梁)나 기둥을 設하지 않고 石灰를 바르지 않는다. 발(簾)의 가장자리(緣)는 錦罽繡・野草羅의 사용을 금하며, 屛風에 수놓는 것을 금하고, 床은 玳瑁나 沈香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84)《}三國遺事》 권 1, 紀異 2, 辰韓.

⁸⁵⁾ 洪亨沃, 《韓國住居史》(民音社, 1992), 79쪽.

^{86)《}三國遺事》 권 1, 紀異 2, 又四節遊宅.

^{87) 《}三國史記》 권 33, 志 2, 屋舍.

- 6頭品의 방은 폭과 넓이가 21척을 넘지 못하며, 당와를 덮지 않고, 비첨과 重栿(겹들보)・拱牙(기둥 위에 架設方木)와 현어를 설하지 않으며, 금은・유・석・白鑞과 오색무늬로 장식하지 않는다. 中階와 二重階를 만들지 않고, 階石을 같지 않으며, 담장은 8尺을 넘지 못하고, 또 그 보와 기둥을 설하지 않으며, 석회를 바르지 않는다. 簾緣은 罽繡綾의 사용을 금하고, 병풍은 수놓은 것을 금하며, 상은 대모나 紫檀・沈香・黄楊木으로 장식하지 못하고, 또비단자리를 금한다. 重門과 四方門을 설하지 않고, 馬廐는 5匹을 둘 만하게만든다.
- 5두품의 방은 폭과 넓이가 18尺을 넘지 못하며, 山楡木을 쓰지 않고, 당와를 덮지 않는다. 獸頭(지붕 위에 얹어 놓는 獸形物)를 만들어 놓지 않으며, 비첨·중보·花斗牙(기둥 위의 架設方木)·현어를 하지 않고, 금은·유·석·銅·납과 오색무늬로 장식하지 않는다. 계석을 갈지 않고, 담장은 높이 7척을 넘지 못하며 보를 가설하지 않고, 석회를 바르지 않는다. 염연은 錦罽綾絹絁를 금하고, 큰문과 사방문을 내지 않으며, 마구는 3필을 둘 만하게 한다.
-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방의 폭과 넓이가 15척을 넘지 못하며, 산유목을 쓰지 않고, 藻井(水草를 그린 천장)을 하지 않으며, 당와를 덮지 않 고, 수두・비첨・공아・현어를 만들지 못하며, 금은・유・석・동・납으로 장 식하지 않는다. 섬돌은 山石을 쓰지 않고, 담장은 6척을 넘지 못하며, 또 (담 의) 보를 가설하지 않고, 석회로 바르지 않는다. 큰문과 사방문을 만들지 않 고, 마구는 2필을 둘 만하게 한다.
 - 外位의 眞村主는 5(두)품과 같고, 次村主는 4(두)품과 같다.
- 이와 같이 진골을 비롯하여 그 이하의 계층의 규제는 바로 위의 계층에서 금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부 계층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금하게 되 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내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

통일신라의 家舍規制88)

내용\신분	진 골	6 두 품	5 두 품	4두품~백성
방의 폭과 넓이	24척 이내	21척 이내	18척 이내	15척 이내
기와	당와 금지			
지붕 구조	비첨 금지	공포 금지		조정 금지
지붕 장식	현어	어 금지 수두 금지		= 금지
건축 재료	금은・유・석 금지	백랍 금지	동ㆍ납 금지	
채색	단청 금지			
기단 및 계단	중계 및 이중계 금지			
계단의 석재	다듬은 돌 금지			산석 금지
담장 구조 및 높 이	양동ㆍ석회칠 금지	높이 8척 이내	높이 7척 이내	높이 6척 이내
문	중문・사방문 금지		대문・사방문 금지	
발과 병풍 장식	비단 자수의 금지			
침상 재료	대모ㆍ침향 금지	자단·황양목 금지		
마구간의 규모		5필 이내	3필 이내	2필 이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방의 크기는 진골의 24尺에서부터 4두품이 하 백성들의 15척까지를 규정해 놓았는데, 4두품 이하 백성들의 집은 규모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이다. 그러나 이 가사규제가 해당하는 계급의 최고 상한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은 그 이하의 공간 면적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15척에 가까운 규모의 공간 크기를 가질 수있었던 4두품은 5두품에 가까운 노동력이나 경제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일부의 계층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와 및 지붕 장식에 대해서는 진골·6두품·5두품·4두품 이하 평민들의 살림집에는 唐瓦와 현어를 쓰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5두품과 4두품 이 하 평민들의 살림집에는 獸頭조각을 규제하고 있어 진골과 6두품의 신분층 에서는 치미 대신에 용두나 잡상 같이 짐승머리를 조각하여 사용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⁸⁸⁾ 姜榮煥,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기문당, 1993), 55쪽에서 전재.

공포의 규제에 대해서는 진골신분에서는 언급이 없고, 6두품 이하의 신분에서는 공아·화두아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진골 출신인 태종무열왕 이후진골신분에서도 일부 살림집에 공포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공포는 포 또는 두공이라고도 하는데 기둥의 상부에서 소로와 첨차라는 부재를여러 층 쌓아 올려 기둥과 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포없이 기둥과 도리를 연결시킬 경우 처마가 낮아지고, 길게 뽑을 수 없으므로 이 공포의 부재를 사용하며, 기둥과 도리를 더욱 견고하게 연결시킬 수 있고 건물의 외관을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옥사조의 용어 중 비첨이란 용어가 보이는데 이것은 처마를 더 길게 뽑기 위하여 사용되는 浮椽을 의미한다. 서까래만 있는 처마를 홑처마, 서까래 위로 부연이 붙은 처마를 겹처마라 하는데,이는 겹처마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붕의 구조에서는 6두품과 5두품의 계층에서는 重栿 즉, 두 개의 보를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五梁구조를 뜻하는 것이 다. 3량가구법에서는 단면으로 살펴보면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보를 걸치고 기둥의 둘레를 따라 도리를 두른다. 보 위로 대공을 올리고 그 위에 중도리 를 올려 놓은 다음 그 중도리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서까래를 올리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가구법이며 이 방법은 지붕의 형태를 맞배지붕(배지붕)밖에 만들 수 없다. 5량가구법은 두 개의 기둥 사이를 긴 보(대들보)를 건너지르고 그 위로 대공을 두 개 올리고 이 대공을 중도리와 결구시키고 중도리 사이 를 짧은 보(종보)로 건너지르고 그 위로 한 개의 대공을 올리고 그 대공 위 에 중도리를 올리고 중도리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짧은 서까래(短椽)를 중 도리까지 걸고 그 중도리 위에서 다시 긴 서까래(長椽)을 걸어서 지붕을 구 성한다. 이 5량가구법은 가장 간단한 3량구조에서 발전한 형태로 합각지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며 기둥 간격을 넓게 잡을 수 있고, 짧은 서까래와 긴 서까래를 이용하여 지붕의 물매를 다르게 하여 지붕의 곡선을 유려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두 종류의 서까래를 사용하기 때 문에 짧은 부재를 이용하는 데도 매우 유리한 구조법이다.

건축재료에는 진골도 金·銀·鍮 등과 같은 귀금속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하고 있고, 건물의 채색에도 五色의 칠을 금하고 있다. 이 오색은 黃·靑

·白·黑·朱의 색깔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음양오행사상의 다섯가지 색깔을 뜻하며 이것은 곧 丹靑을 의미한다.

床의 재료에는 진골의 계층에서는 대모·침향을 금하며 6두품 이하의 계층에서는 黃楊木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때 이 상을 건물 전체의 바닥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침대로 보는 학자도 있다.89) 그러나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상은 바닥의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의 일부분에 榻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 일종의 침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발과 병풍의 장식에는 진골 이하의 계층에 모두 비단자수를 금하고 있다. 이 발과 병풍의 사용은 실내의 공간을 구획하는 데 필요한 생활용구임을 감 안할 때, 이 당시 실내의 공간구획은 단일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주생활은 일부의 귀족계급에서나 볼 수 있는 주생활의 단면이며 농업이나 노동에 종사하던 일반백성들의 주생활은 대부분은 전시기의 생활형태를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아직도 일부의 계층에서는 움집과 비슷하게 땅을 파고 집을 만든 수혈주거와 비슷한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나 그외에는 원시적인 초가집의 형태를 가진 주거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붕의 재료는 볏짚이나 새로 지붕을 이 엇을 것으로 추측되며 벽체나 칸막이는 흙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온돌의 여부가 주목되는데 한겨울의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원적인 온돌의 구조나마존재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비단이나 모직으로 만든 의복과 이불을 사용할수 없었던 이 계층에서는 온돌구조가 필수적이었으리라고 추측된다.

〈李鐘哲・崔銀水〉

⁸⁹⁾ 姜榮煥, 위의 책, 60쪽.